

함께하는

FTA

October 2013

www.ftahub.go.kr 'vol. 17'



2단계 협상 앞둔 한·중 FTA의 성공 방정식

공세적 이익·민감성 보호 동시에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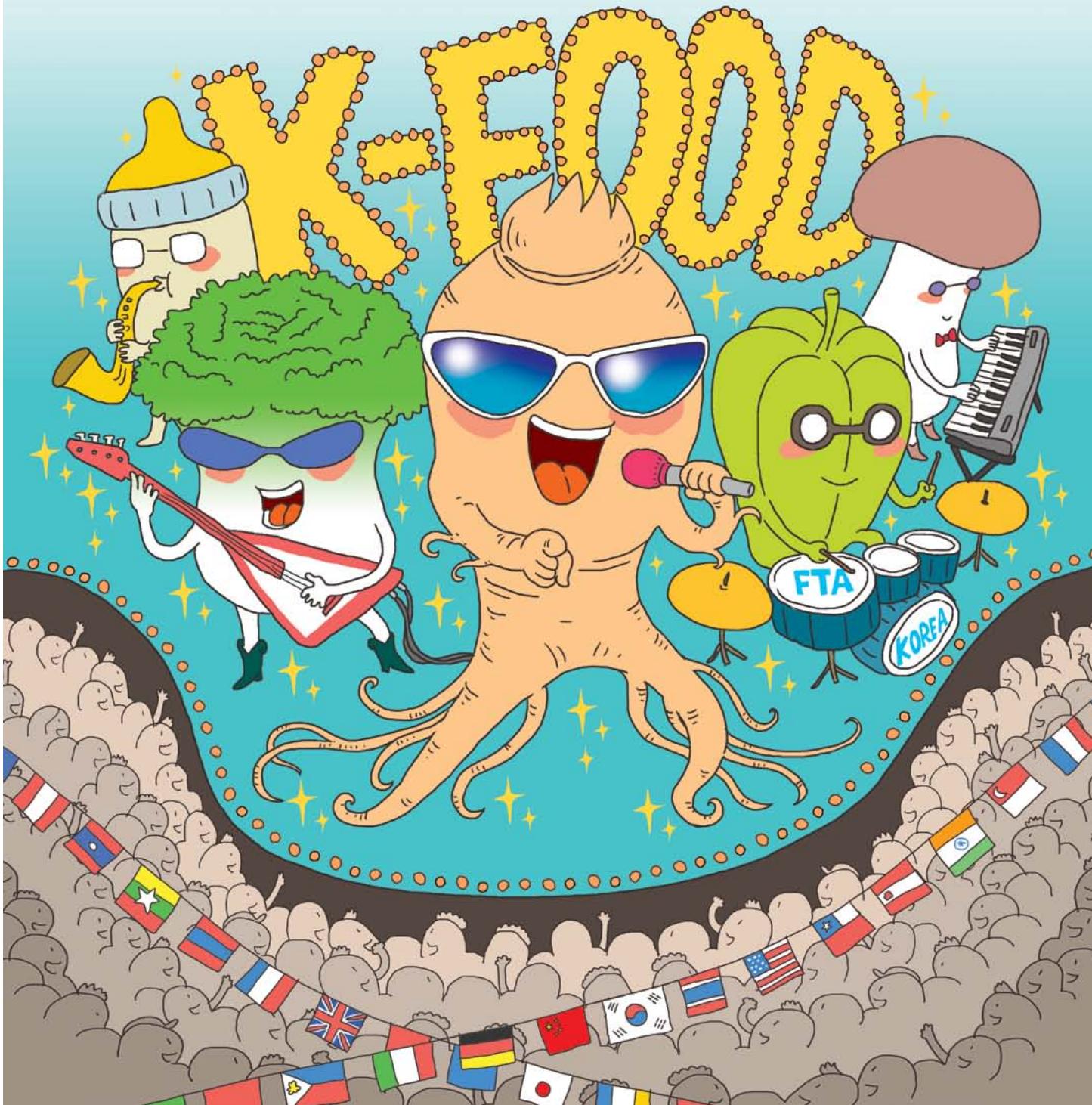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완전정복

전 세계가 열광하는 식품한류, FTA가 앞당깁니다

한국이 제조업에서만 강국이란 법 있나요? 식품에서도 저력을 발휘하지 말란 법 있나요?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경역기준을 맞춰 나간다면 전 세계인이 K-푸드의 매력에 끌 빠지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품질을 높이고 생산 효율화에 나선다면 식품한류 전성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매력덩어리 한국과
제 고국 중국의 FTA를
응원 합니다”**

왕열(王悅)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3학번(중국인 유학생)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3학번 왕열(王悅·왕위에)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됐네요. 한국은 사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벌써 한국에서 다섯 번째 가을을 맞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온 것은 2009년 3월입니다. 중국 하베이성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로 진학을 했답니다. 요즘 중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대학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제가 인하대학교에 다닐 때에도 중국 학생들이 교내 1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아시아에서 유명한 대학들이 한국에 정말 많아요. 전 외동딸이지만 부모님은 한국으로의 유학을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처음 생각한 건 드라마 '가을동화'를 보면서였어요. 드라마의 배경이 된 장소들이 너무 예뻐서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꿈처럼 지금은 한국에 와서 생활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저는 지금 한국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4박5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또 한국의 부대찌개와 불고기도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제가 본 한국의 매력은요,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면서도 다양한 세계문화와 잘 융합하는 것이에요. 안동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의 전통문화와 전통 음식이 잘 계승되고 있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쇼핑하고 여행하기가 너무 좋아요. 품질도 최고지만 판매원들도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오나 봐요.

한중 무역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학부에 이어 대학원에서도 국제통상을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과 중국의 무역량은 계속 증가해 2007년 중국은 한국의 수출 대상국 1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중 FTA 협상 중이잖아요. 상품 교역은 물론, 한국의 전통문화, 음식, 친절함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교역에도 한중 FTA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한·중 FTA는 동아시아의 무역자유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쪼록 한국과 중국이 FTA를 맺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치적으로 서로 이해가 깊어지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국과 중국 간 다리를 잇는 통상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

정리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Contents

01 FTA 캠페인

“매력덩어리 한국과 제 고향 중국의 FTA를 응원 합니다”

04 인트로 칼럼

동아시아 경제지형 급변과 한국의 FTA 전략

한·중 FTA 발판으로 아태자유무역 주도자로 나서자

커버 스토리

2단계 협상 앞둔 한·중 FTA의 성공 방정식

공세적 이익·민감성 보호 동시에 추진한다

06 이익 극대화를 위한 한·중 FTA 2단계 협상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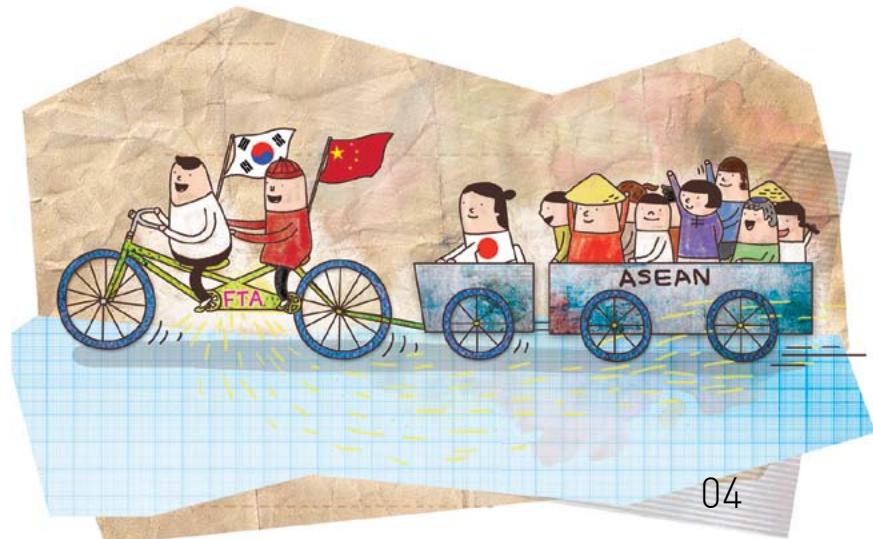
성장·일자리 확보·업그레이드라는
근본 이익 추구 잊지 말아야

08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속내

제조업 강국과의 첫 FTA·자국 경쟁력 제고 기대

10 특집 인터뷰: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한·중 FTA 2단계 협상 시
공세적 이익과 민감성 보호 간의 균형 달성 노력”



04



10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3년 10월 10일(통권 17호)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

2013 October vol.17

www.ftahub.go.kr

FTA 즐기기

12 전남FTA활용지원센터

‘한 번을 들어도 알찬 교육’에 온 힘을 다해요

14 FTA유관기관 탐방: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FTA활용+수출지원’ 동시에 책임집니다

16 중소기업 천하: 김 제조업체 ‘대륙식품’

중국 비관세장벽 해결되면 중소 식품업체들에게도 기회 올 것

18 원산지관리사 채용 보조금 간단 매뉴얼

1인당 최대 1년 간 연 1080만 원 지원, 기업별 최대 4인까지

FTA 카툰

21 한·중 FTA로 13억 거대 시장이 열립니다!



24



38

스페셜 리포트

22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요 내용

기업들의 ‘손톱 밀 가시’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24 무르익는 한·베트남 FTA의 과제와 기대 효과

매력적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
현 개방 수준 더 높여야 양국에 이익

FTA 활용

26 예제로 따라하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완전정복

정해진 서식 없이 필수항목만 기재, 권고서식도 많이 활용

30 화학공정에서 재료의 단순혼합공정

‘단순 혼합’도 분자식 바뀌면 ‘충분가공’ 인정

32 부담스런 부가가치기준 어떻게 해결할까

주먹구구식 계산·조금함은 금물,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FTA 아카데미

34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FTA를 체결하면 작은 나라가 손해인가

작은 나라일수록 시장 확대 효과 커져

FTA 뉴스

36 제5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등

걸쳐 윈도우

38 중국 최고의 비경 장자제(張家界) 즐기기

신선이 노니는 곳, 바로 이곳이어라

별별랭킹

40 한국의 13대 수출품 9월 수출동향



34

동아시아의 경제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초대형 지역다자 무역협정으로서 미국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는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이 일본의 공식 참여로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 10개국이 중심이 되고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지역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도 중국의 깊은 관심 아래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에 더해 양자 간 협정으로서 한·중 FTA가 분야별 협상 단계로 진입하고 한·중·일 FTA 협상도 공식적으로 일단 출범했다.

동아시아 경제지형 급변과 한국의 FTA 전략 한·중 FTA 발판으로 아태자유무역 주도자로 나서자

글 안충영 중앙대학교 석좌교수(경제학)/외국인투자 음부즈만/전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한국은 EU와는 2011년 7월에, 미국과는 2012년 3월에 FTA를 발효시켜 세계 양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제 지역 단위 FTA는 점점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서 안보적 외교적 성격도 더욱 크게 뒤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기한 FTA의 합종연횡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우선 FTA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지적된 농촌붕괴나 광우병의 만연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미 FTA 발효 일 년 반을 훨씬 넘긴 이 시점에서 미국산 농산물과 쇠고기 수입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 대신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더욱 증대되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2011년에는 도착기준으로

67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104억 달러로 늘어났다. 양국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양국이 각기 체결한 여타 FTA보다도 한·미 FTA를 수준 높은 '골든 스텐다드'로 평가하고 양국이 앞으로 체결할 여타 FTA의 벤치마킹 교범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농수산물 순수입국, 한국에게도 기회

지금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정책은 한·중 FTA 협상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키로 양국 정상이 지난 6월 합의했고 이미 분야별 공식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중 간 교역규모는 2012년 2,151억 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액의 20.2%를 차지하는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통상파트너이다. 미국·EU와의 교역량보다 대중 교역량이 더 큰 상황이다. 중국의 장기고성장 전망과 근접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중국과의 FTA협상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가장 민감한 농수산물의 경우 우리가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중국은 농수산물의 순수입국으로 2012년에는 921억 달러의 농수산식품을 수입했다. 한·중 FTA는 한·중 간의 경제 밀착도로 볼 때 한·미 FTA보다 그 영향이 더욱 크다. 특히 중국과의 FTA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북한 관리라는 안보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는 우리나라 농업과 노동집약 중소기업 부문의 개방과 대북 관리를 위한 안보가치 사이에 균형을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TPP에 창설 멤버로 참여

다음으로는 TPP에 대해 우리도 창설멤버로 조속히 가입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TPP의 12개 회원국은 현재 세계GDP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품·서비스·투자 등 29개 분야에서 한·미 FTA 수준에 필적하거나 더욱 높은 개방과 투자교류를 지향하고, 앞으로 다자간에 적용할 원산지규정 등 공동의 규칙설정 등으로 우리에게 추가 성장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원래 TPP는 아태경제협력(APEC) 협의체에서 사이드 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2005년 5월 출범시켰고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합류한 이후 미국이 운전석에 앉으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 뒤 2010년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여하고 드디어 일본의 아베 정권이 지난 7월 제18차 TPP협상에 공식 참여하면서 TPP는 중국이 배제된 채 강도 높은 추동력을 받게 되었다.

TPP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내년 상반기 중 타결을 목표로 미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이 TPP 창설 회원국의 지위를 놓치고 TPP 타결 이후 가입을 시도한다면 기 타결 조건을 받아 드릴 수밖에 없는 '가입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우리가 TPP에 창설멤버로 참여하면 우리의 농업 등 민감 분야의 추가개방에 대하여 우리의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TPP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한국, 역내경제통합 중재자 역할로 나서야

한편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배제된 RCEP은 경제규모에 있어 TPP에 버금가지만 회원국의 지나친 다양성 때문에 TPP보다 개방성이 낮고 전도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RCEP 협상에도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개방형 경제통합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한·중 FTA를 추진하는 와중에 중국이 배제된 TPP에 합류하는 것이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도 중장기적으로 TPP에 가입할 뿐만 아니라 미·중 양자 FTA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과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따

라서 우리는 TPP가 미국에 의한 대중국 경제봉쇄정책이라는 틀에 갇혀 우리의 통상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유념할 점은 TPP 협상에 참여하면 일본의 서비스시장과 농업 개방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우리의 일본시장 진출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다는 데 있다.

한국은 최근 미국과 일본 사이의 안보동맹 밀월관계가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신냉전 질서로 발전하지 않도록 경제적 측면에서 아태지역 전체를 개방형 무역과 투자유화 지역으로 만드는데 우리의 통상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TPP와 RCEP에 참여 시 한·미 FTA 때보다 추가적 개방이 일부 농산물과 노동집약형 중소기업 제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내 대책과 함께 농업의 수출 산업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TPP, 한·중 FTA, RCEP에 동시 참여하면서 역내 중강국(中強國)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역내경제통합 중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중국이 포함되는 명실상부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결성에 적극 기여하는 경제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선진통상국가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



이익 극대화를 위한 한·중 FTA 2단계 협상 전략

성장·일자리 확보·업그레이드라는 근본 이익 추구 잊지 말아야

1단계 협상이 살바싸움이었다면 곧 시작될 2단계 협상은 한·중 FTA의 본게임이다. 상품 즉 관세협상에서는 상호 기대 및 피해 업종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비관세 분야도 이익 극대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낱말과 토씨 하나하나를 사이에 둔 양국 간 실랑이가 기다리고 있다.

글 정환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목표가 분명해야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중국시장의 특성과 성장 가능성, 한·중 관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한·중 FTA로부터 3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출 확대를 통한 성장 촉진이다. 우리 대중 수출의 대부분(75%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의 수출관세 철폐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관세철폐 효과는 25%에 이르는 최종 제품에서 특히 두드러질 것이다. 중국은 최종재, 그중에서도 소비재의 수입 관세가 높은 국가이다. 최종 소비재의 직접 수출은 국내 생산기반 강화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국내투자 확대 효과다. 국내투자 확대는 세 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중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때문에 중국에 직접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완화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심지어 이미 중국에 진출한 일부 기업의 국내 U턴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FDI) 확대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하고 싶지만 중국의 투자 제한과 비관세장벽을 경계하는 선진국 기업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우회 진출기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시장, 특히 한국과 FTA를 체결한 미국, EU에 수출하려는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확대다. 한국에 투자한 중국기업은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이고 선진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동아시아 국제분업구도 내 우리 경제의 업그레이드 효과이다. 한·중 간에 FTA가 체결되면 중국을 생산기지로 이용하는 기존의 단순 분업구조가 진정한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R&D,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센터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잘 살리는 방법은 역시 고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관세철폐 대상을 최대한 넓히고 투자, 서비스, 기타 비관세장벽 및 규범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더욱 쉽게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와주고 우리 기업이 황해 바다 양편을 오가면서 최적의 생산과 판매 네트워크, 즉 생산의 가치체인(value-chain)을 만들어 가도록 해 주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앞으로 본격화 될 동아시아 경제통합

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다. 물론 이러한 높은 수준 개방에는 농산품 등 피해분야 보호라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한국과 중국, 총론에선 동상(同床) 각론에선 이몽(異夢)

중국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바랄까? 지난 6월 27일 시진핑 주석의 말대로 일단 중국은 고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추진한다는데 동의했다. 실제로 7월 초에 끝난 1단계 협상에서는 '중상 수준의 포괄적 FTA'로 한·중 FTA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다. 상품(관세) 분야에서는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한 관세 철폐, 그리고 추후 협상과정에서 개방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약속이 이루어졌다. 포괄적 FTA를 위한 골격도 마련되었다. 표에서 보듯이 서비스, 투자는 물론 그동안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던 대부분의 규범분야도 협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실제 협상에서는 어떨까? 개방 수준과 포괄 범위에 대해서만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협상이 세부 주제로 들어갈수록 양국의 입장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부각될 것이다. 우선 관세 철폐·인하의 대략적인 범위가 정해졌다고는 하나 중국은 자동차 등 자국이 육성하려는 산업과 최종 소비재의 관세 철폐를 어떻게든 저지하려 노력할 것이다. 중국의 태도는 서비스·투자에서 더욱 완고해질 가능성이 크다. 자국의 발전 수준에 비해 이미 충분히 서비스업을 개방해 왔고, 무제한 투자를 개방하기에는 산업이 취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재산권,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 규범 분야에서 중국은 아예 제도의 미비와 경험 부족을 내세워 난색을 표명할 가능성이 많다. 반대로 중국이 적극적인 분야도 있다. 특이하게 중국은 그간의 FTA 추진 과정에서 협력을 중시해 왔고, 이런 '전통'은 한·중 FTA 1단계 협상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났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근본이익 관철과 세부적 협상 자율성간 균형이 관건

복잡다기하고 천차만별인 협상 주제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고 딜 중요한지, 주제별로 어떤 입장을 내세울 전지 수정 불가능한 잉크 답안지를 써들고 협상에 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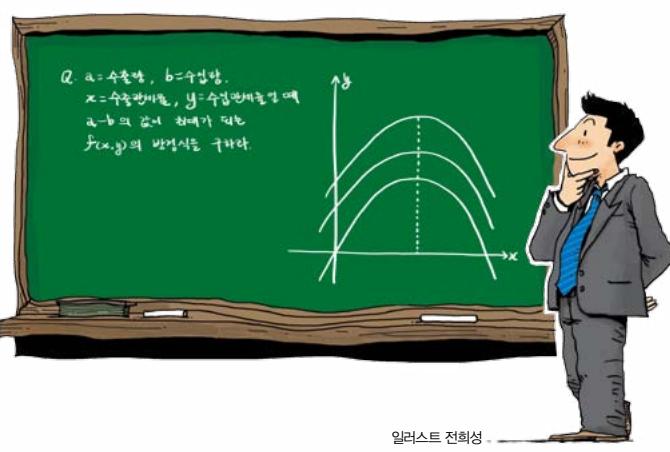
한·중 FTA 분야별 협상 전망

한국	의제	예상 입장		
		한국	중국	입장 차이
상품	상품	고수준 개방(단, 농산품 보호 요구)	저수준 개방('주력업종' 보호)	중간
	비관세장벽	제한 철폐·완화 요구	철폐·완화에 소극적	큼
	원산지	원산지 기준·절차 *역내가공/개성공단 인정 요구	기본입장 유사, 단 세부 차이 *역내가공/전정 기본 동의	중간
	통관·무역 원활화	투명성·일관성, 신속성, 확대 적용 가능성 요구	기본입장 유사, 단 세부적 차이	작음
	무역구제	투명·예측 가능한 심사절차·기준·판정 요구	상동	중간
	TBT·SPS	TBT: 적합성평가 개선 요구 SPS: 절차, 기준 논의 ('지역화' 주장에 대비)	TBT: 적합성평가 개선에 소극적 SPS: 절차, 기준 논의 ('지역화' 주장)	큼
서비스·투자	서비스	개방확대 요구, 일부 소극적	개방확대에 소극적, 일부 적극 요구	큼
	투자	투자자유화 확대 등 요구	투자자유화, 국내제도(청산 등) 개선에 한계	큼
규범	경쟁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기본입장 유사	작음
	지역재산권	효과적 집행, 출원·등록절차 개선	기본입장 유사, 일부 요구 가능성	중간
	투명성	규정·제도의 공포·정보제공·행정 절차상 투명성 요구	규모·제도 이유로 소극적 태도 및 집행력 부족 가능성	중간
	환경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환경협력 강화, 환경영향 평가 요구	기본입장 유사, 집행력 부족 가능성	중간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제품 무관세·비자별, 온라인 소비자보호 등	기본입장 유사하나 일부 제한 시도 가능성	중간
	협력	에너지·자원, 중소기업, 식량안보·농수산 투자, 어업, 식품안전 등 모색	좌동	중간
	정부조달	정보교환, 후속협상 문제 논의	좌동, 단 소극적	중간

* 입장차이는 5가지(큼, 중간, 적음)로 구분했으며, 기존 FTA에서 체결한 내용을 토대로 양국의 태도를 전망한 것으로 양국의 한·중 FTA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

필요는 없다. 아니 확정된 답안지를 써들고 들어가는 것은 협상이라 할 수 없다.

중요한 건 근본 이익을 확보하는 일이다. 성장·일자리·업그레이드라는 근본이익 관철을 위한 지침으로는 이미 '고수준의 포괄적 FTA'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지침과 세부 주제별 입장 차이를 연결하고 조정해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일은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 대목에서 예기치 않은 피해 가능성에 잘 대비하는 전제하에 협상대표단이 충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책임과 자율성간 균형을 위한 배려는 대외협상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지만 수천 년 간 '천하질서'를 관리해 온 '협상의 달인'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속내 제조업 강국과의 첫 FTA…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대

한·중 FTA와 관련해 국내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처럼, 중국 또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FTA 협상은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인 만큼 중국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FTA 협상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글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중국은 현재까지 31개 국가와 18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1개국(홍콩 포함)과의 12개 FTA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대상국들은 ASEAN(아세안·10개국)을 포함하여 파키스탄, 싱가포르,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다. 상대적으로 제조기반이 취약한 개도국 또는 농업 선진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중화권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홍콩과는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통해 서비스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방하고 있고, 대만과는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한 후 지난해 8월에는 투자보장협정, 금년 6월에는 서비스협정을 타결하고, 상품분야 협상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호주, 노르웨이, 한중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 22개 국가와 6개 FTA 협정을 협상 중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 대상국은 주로 주변국, 자원 부국, 중국 대륙과 특수 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들이다. 한국은 주변국이지만 자원 부국은 아니며 홍콩이나 대만처럼 중국과 특수 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중국처럼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한·중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한·중 FTA에 대해 중국에서는 중국의 지역경제통합 전략상의 중요성, 외교·안보전략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외에 한국과 경제적·지리적으로 긴밀한 지방의 개방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의들이 있다.

한·중 FTA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구상의 한 축

한·중 FTA는 중국의 통상전략, 특히 지역통합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지역경제통합에 있어 자국 중심의 동아시아 및 FTAAP(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아태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것으로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은 한·중·일 FTA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력체제)를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에 응하여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했다. 그 결과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나 RCEP의 추진력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 FTA가 한·중·일 FTA를 가속화시키고, 더 나아가 RCEP과 FTAAP로 이어지는 중국 주도의 경제통합을 하는 시발점인 동시에 '촉진제' 또는 '기폭제'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한·중 FTA는 동북아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조와 안정, 특히 한반도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 내에서는 한·중 FTA를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위험을 축소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또한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동북아의 지역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는 한·중 FTA가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외교·안보 의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의 FTA로 자국 경쟁력 제고 유도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한·중 FTA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밀접한 지방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오진평(趙晋平)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대외경제부 부부장은 한·중 FTA가 중국의 지방경제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과 지리·경제적으로 밀접한 지방정부에서는 한·중 FTA의 시범협력지역 지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동성은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첨단산업, 현대농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 등에서 한국과의 시범협력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길림성 역시 한반도와의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한중 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지금까지 중국은 한중 간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은 한국에 대해 농수산물과 소비재 교역에서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중간재와 자본재에서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농산물과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재 시장의 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한국 내 농산물 개방에 대한 반대



일러스트 전희성

가 한·중 FTA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의 취약산업에 대한 한국의 임식으로 인해 한중 무역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은 한·중 FTA의 민감분야로서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 분야와 전자정보, 기계설비 등 부품 및 자본재 산업, 자동차 산업을 적시하고 있다.

중국의 개방론자들은 한·중 FTA를 자국 내의 개혁과 국유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한·중 FTA는 중국이 공업 국가와 맺은 첫 번째 FTA라는 점을 활용할 경우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선진 공업 국가와의 FTA에 대비하는 시험장으로서 한·중 FTA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이 반영되어 한·중 FTA의 모델리티 협상에서는 민감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FTA보다는 포괄적이고도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한·중 FTA 2단계 협상 시 공세적 이익과 민감성 보호 간의 균형 달성 노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통상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지난 4월부터 한국의 통상교섭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2단계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우태희 실장으로부터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병세 기자

지난 9월 초에 한·중 FTA 제7차 협상이 중국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협상 진행 상황 및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제7차 협상에서 우리 측과 중국 측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 문안에 합의함으로써 작년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 목록 범위를 우선 정한 뒤에, 향후 2단계 협상에서 전면적인 품목별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1단계 협상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품분야에서 양국은 품목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하였습니다. 서비스 투자분야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데 합의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도 합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산업 협력, 농수산협력 등도 2단계 협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7차 협상의 의미와 성과는 무엇인지요?

이번에 마무리된 1단계 협상은 2단계 협상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향후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의 협정

문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민감 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 수준에도 합의했습니다. 상품분야 모델리티에서 역외가공지역 논의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역외가공지역 조항은 최근 남북 간에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서비스, 투자분야에서는 WTO 서비스 협정 및 기존 투자 협정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그 외에도 중국 측이 논의에 소극적이던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의 분야를 향후 협상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세·비관세장벽의 철폐·완화 효과 이외에도 중국 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서는 한·중 FTA에 따른 농수산 분야 및 중소기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한·중 FTA 체결 시 우리 농수산 분야에 관하여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해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장치를 확보한 후에 본격 협상에 들어가게 되며, 우리 농수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 경쟁력 취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업전환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내 산업의 건전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섬유, 의류, 신발 등 취약 산업별로 고기능소재개발, 융복합 기술 개발 등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중 FTA 1단계 협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보호할 품목 선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향후 보호 품목 선정에 대한 입장이 궁금한데요.

주로 농수산물, 일부 제조업 등이 보호대상 품목에 해당



이번에 마무리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에서는 우리 민감 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화율 수준에 합의했습니다. ■



될 것으로 보이나,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개별 품목들을 사전에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품목 선정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리가 기준에 체결한 FTA에서의 사례, 중국과의 자리적 균형성, 산업 구조의 급속한 발전 및 변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협상 결과물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나, 우리로서는 민감한 농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통관지연, 복잡한 기술규정, 비효율적인 자재권 집행절차 등 각종 비관세장벽을 통관, 기술 장벽(TBT), 자재권 등 분야별 협상에서 논의하고, 또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도입 필요성 등도 2단계 협상 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종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교역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2단계 협상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지요?

2단계 협상은 11월 경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2단계 협상에 대비하여 부처 간 협의는 물론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에서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에 공세적 이익과 민감성 보호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

전남FTA활용지원센터

‘한 번을 들어도 알찬 교육’에 온 힘을 다해요



전라남도는 예로부터 풍요의 땅으로 불릴 정도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런 환경은 농수산업을 발달시켰지만 제조업 발달에는 특별한 강점으로 작용하지는 못했다. 전남FTA활용지원센터는 지역 내의 다양한 산업들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종별 설명회·교육·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농수산식품기업의 비중이 높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전라남도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전남FTA활용지원센터는 규모별·업종별로 세분화된 설명회·교육·컨설팅·상담에 주력하고 있다.



“전라남도 내 산업 중 제조업은 약 40%로 다른 지역 대비 제조업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남FTA활용지원센터(이하 전남센터)의 오주승 센터장은 전남의 산업 현황을 이렇게 소개했다. “또한 지역 내 산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업의 경우 이미 관세가 낮은 품목 위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전반적으로 FTA에 대한 관심이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센터는 FTA활용 지원과 더불어 FTA 활용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설명회·교육·상담·컨설팅의 경우 업종 전체

를 아우르는 통합 단위보다는 업종별로, 또 기업의 규모별로 나눠서 하고 있다. 또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실무자가 FTA 교육을 위해 자리를 오래 비우기가 어려운 만큼 일반적인 내용은 줄이고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위주로 세분화하여 교육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남센터는 올해 지역 중소기업 실무자 45명, 유관 학과 대학생 76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을 진행했고, 광양 상공회의소·광주 본부 세관과 협동으로 FTA활용전략 설명회를 열었고, 총 43개 업체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했다. 오 센터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CEO 중심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간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사례 1

형광등 부품 제조업체 S사

한·아세안 FTA 활용 이후 바이어의 관심·주문 늘어

전남 나주시 외곽에 소재한 S사는 1992년 설립돼 형광등 부품인 베이스 캡(base caps, HS코드 : 7606.11, 4804.31, 8539.90)을 제조해오고 있다. 직원 7명의 소규모 회사로 지난해 매출은 13억2,200만 원이다. 최근 LED 등 새로운 조명기구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형광등의 국내 수요가 감소하면서 S사의 형광등 부품 수요도 감소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동남아 등 저개발국으로 눈을 돌려 베트남에 수출선을 확보하고 수출을 시작했다. 지난해 S사의 수출액은 38만 달러로 S사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수출이 차지하게 되었다.

지난해 6월 바이어로부터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 적용을 위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 요청이 들어왔다. S사가 베트남에 수출하는 제품은 한·아세안 FTA로 과거에 3~20%이던 관세율이 한국산 인정을 받을 경우 0%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직 6명을 제외한 관리직 사원 1명만으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바이어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었고, 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S사는 전남FTA활용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요청하게 됐다. 이에 전남센터의 직원과 관세사가 업체를 방문해 FTA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었다. S사가 준비한 서류를 전남센터의 상주관세사가 최종 검토해 마침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이후 지금까지 지난해 수출액을 상회하는 약 50만 달러의 주문을 받았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바이어에게 제공했다. 또한 기존 생产业 외에 알루미늄제 베이스 캡을 대체하는 플라스틱제 캡을 추가 주문받아 10월 생산을 앞두고 있다. FTA 업무에 익숙해진 S사는 전남센터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플라스틱제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FTA를 활용한 수출에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mini interview

한·중 FTA 발효되면 농수산식품기업에 기회 생겨



오주승
전남FTA활용지원센터 센터장

전남 지역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전남의 경우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여수의 화학산업단지가 유명하며, 이러한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FTA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소규모 업체들로 전남은 제조업, 농수산식품분야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FTA에 대한 관심도도 낮고, FTA 활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면 FTA활용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업종, 규모가 다른 업체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진행하면 큰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산업을 사례로 들기도 어렵고, 사례로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따라서 업종, 기업 규모 등으로 ‘잘게 쪼개기’

를 해서 비슷한 업종·규모로 나눠 설명회·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은 기업의 경우 실무자가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간 때우기식 교육이 아니라 한 번을 들어도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체결에 대해 관내 기업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전남의 농수산가공식품 기업의 수출 대상은 대개 중국과 일본입니다. 둘 다 지금은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데 중국과의 FTA가 체결·발효된다면 전남의 식품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 전남센터에도 FTA 활용을 위한 지원 요청이 크게 늘어나겠지요.

전남FTA활용지원센터 ☎ 061-288-3800

전남 FTA활용지원센터의
FTA 컨설팅 사례

사례 2

내화물 및 연마제 생산업체 D사

유럽시장의 침체, 한·아세안 FTA로 돌파한다

D사는 전남 영암군의 대불산단에 위치한 직원 70명, 연 매출액 1,000억 원 규모의 제조업체로 고급 내화물용 원료(HS코드: 2841.90)와 연마제용 알루미나(HS코드: 2818.10)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수출지역은 EU로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50억 원에 이른다. 제법 규모가 있는 업체다 보니 이미 2011년 광주본부세관을 통해 두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고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유럽의 경기 침체와 유럽시장에서 중국의 저가제품의 공세로 최근 유럽 수출이 감소하였지만,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잘 대응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수출선으로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현재 전남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상태이며 이러한 FTA 활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변국들에 대한 수출길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D사는 유럽 시장에서 저가의 중국제품 공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FTA로 인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가면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러한 대응은 평소 FTA에 대한 철저히 준비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FTA활용+수출지원' 동시에 책임집니다**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 정부 기관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청은 오랜 기간 중소기업을 지원해 온 경험과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사정에 알맞은 FTA 활용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한국이 외국과 FTA를 맺으려는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무한한 기회가 열린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국내에는 이미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FTA를 통해 특혜 관세 적용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상대국과의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의 새로운 동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FTA무역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청은 오랜 동안 중소기업을 지원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FTA협상에서부터 FTA활용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입장

을 대변하고 지원하고 있다. 타 기관과 달리 FTA 원산지관리에 그치지 않고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장점이다. 중소기업청은 전국의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FTA 활용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본청 경영판로국 해외시장과는 FTA활용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다.

FTA 체결 전 준비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이해 반영

중소기업청은 FTA 체결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중 FTA, 한·중·일 FTA 등 향후 체결이 논의되는 FTA에 대한

▲ 중소기업청은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밀착형 FTA 활용 지원 및 수출연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해외시장과 직원들.

관련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FTA 협상 추진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학계·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해 향후 체결될 FTA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FTA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수출지원센터는 FTA 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센터별 FTA 전담자가 상주하며, 수출 지원 원루프(One Roof) 지원 체계 구축으로 FTA 활용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센터 직원들 또한 FTA 전문 교육을 받고 있으며, 센터 내 원산지 관리 전문가를 확보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관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국 수출지원센터에서는 올해 7월까지 총 874건의 FTA 및 수출마케팅 상담을 진행했다.

중소기업 FTA 활용 역량 강화에 초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FTA 대응역량 강화사업'으로 FTA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FTA 활용 교육은 지난해 179회 7,33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 7월까지 81회 4,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소기업청의 FTA 및 수출 컨설팅은 FTA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실무 노하우 뿐 아니라 해외 판로 개척까지 연계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해오던 수출컨설팅과 FTA 활용 컨설팅을 합친 것으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세일즈, 계약, 생산, 통관(FTA원산지), 물류, 결제, 사후관리 등 무역 전반에 대한 토클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일수는 최대 3~5일로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 지원금액은 업체당 200만 원 이내로 업체부담금 30%다. 올해 7월까지 5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와 원산지증명시스템 연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총비용의 50% 이내,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지난해 134개에서 올해 200개로 지원 기업을 늘렸다.

또한 FTA 체결국으로 무역촉진단을 파견(2012년 87회→2013년 100회)하고, FTA 시장 전략 품목 중심의 '수출유망기업 선정(2013년 상반기 642개 선정)'을 통해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수출 규모 및 성장 가능성을 심사해 수출유망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금·보증 등 23개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주 수요일 'FTA 상담의 날'로 지정

올해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의 FTA 지원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센터별로 FTA 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센터 내 전문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 또한 센터 직원도 FTA 기본교육 및 원산지관리사 과정 교육, FTA PASS 활용 교육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전체 120명이던 비즈니스 지원단 관세사 수를 올해는 200명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한편 11개 지방청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FTA 상담의 날'로 지정하고 FTA 및 수출마케팅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찾아오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접촉했던 기업 중에서 FTA 활용 주요 터겟기업을 선별해 FTA 활용 수출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전국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11개소)

서울	02)2110-635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032)818-8323 안산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445-1) 남동공단 308/L
인천	031)201-68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경기	033)260-1600 강원도 춘천시 안마신로 262(퇴계동)
강원	042)865-61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북	043)230-53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청읍 중심상업2로 48 (양정리)
전북	063)210-64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광주·전남	062)360-9205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대구·경북	053)626-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월암동 111)
경남	055)268-2511~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부산·울산	051)601-5111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신단 335로 8(송정동)

김 제조업체 '대륙식품'

중국 비관세장벽 해결되면 중소 식품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 올 것



한국은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나라'로 통하지만, 농수산식품업이라고 해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농수산식품분야도 눈을 해외로 돌리면 그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품질을 갖춘 경우가 많다. 전라남도 장흥의 김 제조업체 '대륙식품'은 설립 때부터 해외시장으로만 판로를 개척해 20년 동안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다.

글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농공단지에 위치한 '대륙식품'을 찾았던 시간은 밤 9시. 인적이 거의 없는 시골길은 불빛 하나 없이 깜깜했고,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했다. 주위의 다른 공장들이 다들 문을 닫은 그 시간, '대륙식품'의 김 제조공장에서만 빛이 새 나오고 있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20명의 직원들은 모두 생산시설이 있는 곳에서 김의 포장작업을 마무리하느라 한창이었다. 창문을 통해 인기척을 보이자 신정석 대표가 비로소 취재진을 맞이했다.

중국·러시아 주문 맞추려 전 직원이 야근

늦은 시간에 방문이 이뤄진 데는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 하루 전부터 중국과 러시아에서 주문한 1,500박스 분량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전 직원이 야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대표이사까지 달라붙어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빠빠한 인력 운용은 국내 중소 식품업체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쌀쌀해진 가을 날씨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작업 중에 연신 흘린 땀을 훔쳐낸 신 대표는 공장 운영이 "전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것이 겉보기와 달리 만만치 않다고 했다. 바이어들의 주문이 일정하지

20년 간 중국 등 해외시장에 조미김을 수출하고 있는 '대륙식품'의 신정석 대표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해결된다면 국내 중소 식품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산 김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중소 식품업체의 경우 국내 유통은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수출의 경우는 품질을 갖추고 바이어 발굴을 잘 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않고 불쑥불쑥 이뤄지다 보니 안정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고, 오늘처럼 주문이 밀릴 경우 대표 이사와 사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작업장에 달라붙어 일해야만 주문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장이 시골에 위치하다 보니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힘든 것도 큰 애로사항이었다.

1994년부터 해외로 눈 돌려, 20년 한 길

신정석 대표는 김 유통업을 하다가 1994년 직접 조미김 생산에 뛰어들었다. 전국 김 생산의 70~80%가 장흥·여수·고흥·목포 등 전남 앞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다. 장흥군은 군이 직접 '무산김'이라는 김 브랜드를 만들어 지역특산물로 판매하고 있다. 무산김은 김 재배 시 잡초 제거를 위한 염산 처리를 하지 않는 김 원초를 말하는 것으로 '대륙식품'도 같은 원료를 매입하고 있다.

'대륙식품'이 수출에만 매진한 것은 국내 식품분야 시장에서는 중소업체가 설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였다. 잘 알려진 식품 대기업들이 국내 유통망을 꽉 잡고 있어 이름이 알리지 않은 중소업체는 품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식품 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수출이라면 다르다. 품질 경쟁력만 제대로 갖춘다면 중소업체의 식품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브랜드로 해외시장 진출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륙식품'의 지난해 매출은 23억 원으로 수출액도 이와 동일하다. 중국으로 전체 물량의 60~70%를 수출하고, 나머지는 일본, 대만, 러시아에 비슷한 비중으로 나눠 수출하고 있다.

김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만 생산되고 있는데, 생산량은 중국이 가장 많지만 중국에서 조차 한국 김

의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일본 앞바다에 방사능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에 한국산 김을 찾는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신 대표는 수출시장에 대해 "내가 하기에 달렸다"라고 얘기했다. 국내 유통은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벼티기 힘들지만, 수출은 품질을 갖추고 바이어 발굴·관리를 잘 하면 꾸준히 매출이 나온다고 했다. 뛴 만큼 성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중 FTA, 비관세장벽 제거에 노력해야

위에 언급한 것처럼 '대륙식품'은 전체 수출액의 7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신 대표는 "중국은 장사하기 만만치 않은 곳"이라고 말한다. 가까운 중국이라고 해서 준비 없이 일을 추진했다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의 부족이다. 중국에 김을 수출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의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왜 한국산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어떤 때는 잘 이루어지던 통관과 검역이 어떤 때는 까다로워지는 등 중국 당국의 행정 처리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편이다.

이런 이유로 신 대표는 한·중 FTA에 대해 관세 장벽과 더불어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행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관세가 많든 적든 일단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더 많은 한국의 농수산식품들이 중국 진출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더 큰 시장이 열린다면 업체 간 국내 시장을 두고 출혈경쟁을 할 필요 없이 한국의 중소식품업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원산지관리사 채용 보조금 간단 매뉴얼

1인당 최대 1년 간 연 1080만 원 지원,
기업별 최대 4인까지

정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업이 원산지관리사를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원산지관리사가 올해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되면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한 전문인력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관리사 채용 보조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글 우종국 기자 **도울말** 김미정 서울서부고용센터 실무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은 크게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4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원산지관리사 채용 지원은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에 포함된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은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식기반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사업자 관할의 지역별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산하)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 회사가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하여 판단한 주된 업종(1순위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
뉴스 제공업	63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연구개발업	70
광고 대행업	7131
옥외 및 전시광고업	7139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교육학원(기술·직업훈련교육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	85504

[서식 2]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 유형	
○ (예시) 일자리창출하기 지원사업	
※ 일자리창출하기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시간제직업자 지원, 유동창업기업의 고용지원, 창업인력제공 지원 등 책임	
2. 사업체 현황	
○ 사업체 이름,	
○ 사업처분권 : 법률, 사업내용, 주요성산물	
○ 부수상태 : 베이비유보, 저산현황	
○ 조직현황 : 조직체계, 팀별 근로자선임(이장규직 등)	
○ 인사노무제도 현황 : 단원관련제도(교대제 등), 능력개발제도	
○ 사업체 장기 기관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 사업 개요	
○ 사업체 필요성	
○ 세부 성과목표	
○ 사업 전후 구조, 변화	
○ 사업의 장기적 비전	
4. 사업 세부내용	
○ (예시) 실리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구체적 도입방법, 근로자 충구기금, 컨설팅서비스 이용 확대 등	

5. 고용 창출계획

- 근로자 고용 계획
 - (설치체험학습기사인) 근로자수 증가규모: 하드 도입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제도 도입될 적정 6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
 - (고용환경개선사업) 근로자수 증가규모: 한회차로부터 3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최초 자선사업과 평가전 적정 3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임업창업기업교육사업) 근로자 선별 고용계획
 - (천연면역제품생산) 천연면역 신규 고용사업계획
- 근로자 육성, 근로정부수준
 - 후기 소수 체류 규모
 - 근로자 모집 방법
 - 지원사업 이용 고용창출계획

6. 재정 마련

- 후기 소수 체류 규모
- 재정 마련방법

7. 주관 업장

- (예시) 제도도입, 근로자사용 등

8. 기타

- 고용환경개선사업비 공동참여 여부 등
-(공동참여사업주간 참여서 첨부)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표준화 하되, 신청자가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임신지관리사 채용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 전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인력채용 지원'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실제 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 근무 후 1차, 1년 뒤 2차 지원금이 나오므로, 전문인력 채용 전에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대상으로 먼저 선정이 되어야 한다. 지원 신청기간은 올해의 경우 훌수달 마지막날이 마감일로 총 6회이다.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 웹사이트에서 ①'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서식1)'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마감 후 14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개최 후 5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통보된다. 단, 주의할 점은 동일한 회차에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의 4개 사업 중 하나만 지원신청할 수 있다. 다음 회차에는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지원사업을 지원신청해도 무방하다.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제출 기한
1회차: 1월 31일
2회차: 3월 31일
3회차: 5월 31일
4회차: 7월 31일
5회차: 9월 30일
6회차: 11월 30일
(일정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대상이 되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전문인력은 변리사·세무사·관세사·공인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등 다양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에 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가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다만 지원사업 대상으로 채용할 경우 반드시 '경영기획·의사·노무·능력개발·재무·지적재산

권 또는 마케팅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원산지관리사를 채용해놓고 단순제조업이나 조리, 청소, 세차, 하역 등을 주요 업무로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다.

지원금은 해당 인력에게 최대 1년간 지급된 임금의 75%를 한도로 지원된다. 해당 인력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1차 지원금 최대 432만원,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2차로 최대 648만 원을 지급한다(최대 연 1080만 원으로 월 평균 90만 원). 지원 인력 수는 동일사업주에 대해 누적해 총 3명 한도로 지급된다(회차가 달라도 지원금 지급 시점에서 3명까지만 가능). 단 위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만 50세가 넘는 인력을 채용할 경우 추가로 1명을 더 지원할 수 있다(최대 4명). 다만 채용된 인원이 최초 지원금을 받기 전에 자진 퇴사한 경우는 총 지원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전문인력채용 지원사

원산지관리사 채용 보조금 지원 단계



[서식 10]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회자)	
(말 쪽)			
신 청 인	① 사 업 장 명	② 대표자	
	③ 사 업 장 관 리 연 호		
	④ 법 정 명	(주생산점:)	
	⑤ 소 재 지 (담당자: 유대론번호: 전화번호:)		
	⑥ 전 문 인 데 큐 품 (시 품) 내 용 설 정 서 수	명 (<input type="checkbox"/> 만50세이상 전문인력 포함여부)	
⑦ 고용(사용) 전 3개월, 고용(사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 미부	1. 예 2. 아니오		
⑧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사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 미부	원		
⑨ 지 원 금 신 청 액			
⑩ 계좌 번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자침',에 따라 위의 길이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험역서, 근로자대표자의 험역서 및 근로자 등에서 시본 각 1부			
3. 신규 고용(사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명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각 1부			

사업계획서가 승인된 후 채용된 원산지관리사가 6개월 근무 후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후 2차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A

사업계획서 통과 전 채용인력은 소급 적용 안 돼

Q 원산지관리사로 채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FTA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사업지침에 따르면 '경영기획, 인사·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 또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채용된 전문인력별로 특정 업무를 일일이 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위에 나와 있는 업무 중 하나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Q
채용지원금을 목적으로
원산지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채용했다가 1년 고용 후 퇴사를
시키고 또 원산지관리사를
채용하는 회사도 있지 않을까?

이 지원금은 '고용창출지원사업' 일종으로 고용창출이 목적이므로 해당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기 3개월 전부터 1년 후까지 타의에 의한 퇴사가 있으면 지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인은 취업한 회사가 다르더라도 최대 3회(3년)까지로 지원을 한정했다.

Q 원산지관리사 채용 지원신청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야 하는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가 관내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사업 심사 및 지원 여부
결정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서울 서부지역 기업이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면 다시 서울서부고용센터로
신청하라고 안내받을 것이다.

Q
원산지관리사 채용 지원금을
뒤늦게 알았다. 지금이라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원산지관리사 채용 지원은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원 대상기업으로 통보를
받은 이후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 전에
채용된 원산지관리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다.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ork.go.kr 첫 화면 우측 하단) 또는 국번없이 '1350' 후 ③번에서 안내.

업'의 지원금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채용된 인력이 당해사업장의 내부적인 업무수행보다는 경영컨설팅 또는 기술지원 등 외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주로 수행할 경우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컨설팅 업무가 많은 원산지 관리사 채용에 있어 특히 주의할 부분이다.

전문인력채용 지원금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지원되므로 해당 전문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즉,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기준 근로자를 타의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전문인력채용 지원 대상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는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뒤 1차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지원금 신청서 1부 △신규 고용 근로자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문인력 사용에 관한 협약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근태관리부 사본 각 1부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14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1차 및 2차 신청의 경우 최대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해당 연도 예산의 변동 가능성은 고려하여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 1달 이내 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한·중 FTA로 13억 거대 시장이 열립니다!

안종만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요 내용

기업들의 '손톱 밀 가시'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9월 25일(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는 △1·2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점검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의 3가지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수출기업들의 '손톱 밀 가시' 제거를 위해 정부·지자체·유관기관·국회가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책을 내놓아 눈길을 모았다.

글 이진원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1·2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제도 개선 과제 68건, 총 79건의 과제 중 15건은 이미

추진 완료되었고, 63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11건 중 준설토 처리 지원(2조원 규모)을 위한 부두 준설공사가 8월 26일에 개시되었고,

연내 새만금 열병합 발전소(1조 원 규모, 10월 예정), 부

지 현물출자를 통한 공장 증설(1조 원 규모, 10월 예

정), 풍력발전단지(2000억 원 규모, 12월 예정)가 추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 울산

산단 공장 증설, 지역특구 자동차연구소 설치, 산단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까지 총 7건의 프로젝트(총 투자

규모 13.3조원)가 일정대로 진행되면 투자 활성화 대책

의 성과가 확산·체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으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 최소 외국인투자비율 상향조정(10→30%) 등 보완 규정을 담고 있다.

1·2차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제도개선 과제는 68건 중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제완화, 택지지구 준공 후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경자구역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14건이 완료되었고, 54건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1·2차 발표 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3차에는 1·2차 대책에 이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건의 가동 지원은 물론 환경 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현장 대기 중인 기업 프로

젝트를 추가 발굴하여 신속한 투자 유치를 위해 맞춤형 애로 해소를 지원하도록 했다.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관광지내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 지원, △보전 산지 내 공장 적기 입지 지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설(LED) 투자 활성화,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 개발 지원의 5개 프로젝트가동 시 향후 약 5.7조 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② 환경 분야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위험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오염저감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환경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체계로 개편하여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입지(사전 규제)-생산(배출)-폐기물(재활용) 단계별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련법의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③ 또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방향을 정립해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용도지역 규제와 업종 규제를 완화하여 융·복합 활성화를 지원하고, R&D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민간 개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쪽으로 산업단지 개발 방향을 정립하였으며, 도시 지역 산단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노후 산단은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을 통한 매력적인 창의·혁신 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최근 FTA 등 시장개방에 대한 농어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접근성이 좋은 중국, 베트남 등 수출시

장이 확대되고 있어 농수산식품분야도 수출을 확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지만 첨단 기술력을 갖춘 선진 수출국가 달성을 목표로 2017년 농수산식품 수출 160억 달러(2012년 80.1억 달러)를 달성 계획이다. 이를 위해 ①농어업의 성장과 연계될 수 있는 수출기반 조성 ②농어



9월 25일(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국회·기업계에서 약 190명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는 규제로 인해 투자와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식(trouble-shooting)의 토론이 110분 간 진행됐다.

업의 생산구조부터 마케팅까지 맞춤형 지원 ③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사전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의 파프리카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첨단 융복합형 수출농어업 기반 마련 △수출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소가 세부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제2의 파프리카를 만들기 위해 현지 기업인, 농민단체, 수출업체, 디자이너 등 전문가 중심으로 '제2의 파프리카 만들기 팀'을 구성하여 국가별 품목 발굴 및 상품화에 나서게 된다. 또한 농어가의 조직화 및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전담체계 구축, 해외 유통망 구축 및 현지마케팅을 추진한다.

첨단 융·복합형 수출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출전문경영체가 네덜란드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IT·B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첨단온실 신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업투자 및 협업체계 구축, 실용적 R&D 지원, 물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기업애로해소팀', 해양수산부 '애로해결단', 식약처 '위생기준 국제조화 사업단', 관세청 '해외통관 지원단'을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애로에 조치 및 대응하고, 기업과도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출기업 애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교역국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식품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된다.■





무르익는 한·베트남 FTA의 과제와 기대 효과

매력적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 현재보다 개방 수준 더 높여야 양국에 이익

올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6번째 수출국으로, 최근에는 매력적인 생산기지를 넘어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한·베트남 FTA는 현재 2차 협상을 마친 상태로, 양국 간 FTA가 맺어지면 양국 경제 협력 관계에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김한성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진 한국경제신문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한 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과 안정된 경제성장으로 동아시아 경제의 포스트 친다(중국·인도) 국가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12년 기준 베트남의 총 인구는 8,950만 명으로 세계 13위에 해당하며 한반도의 약 1.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기반으로 높은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국가로 분류된다.

1986년 경제개혁 정책인 '도이 모이(Doi Moi: 베트남 어로 쇄신을 의미함)'를 실시하면서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1990년대에 연평균 7.6%의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다소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2001년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1~2007년 연평균 7.7%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또한 2011년 제11차 전당대회

에서는 2020년까지 7~8%의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류' 열풍으로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 커져

우리나라는 1992년 베트남과 정식 외교관계 수립 이후, 2001년 '한·베트남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면서 양자간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009년에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양자 간 교역에서도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1992년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출은 159억 달러로 우리의 6번째 수출국이면서 ASEAN(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수출국이 되었다.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57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20번째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 진출국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경제적 중요성을 지녀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과 중국, 태국 등 인도차이나 반도의 게이트웨이(Gateway)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건, 그리고 여타 ASEAN 국가에 비해 일본이나 중국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는 점 등은 베트남이 한국의 매력적인 생산기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과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까지 높아지면서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를 넘어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한·베트남 양자간 FTA 추진은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한·베트남 교역관계와 중요성을 반영하고 양국 간 경제관계를 발전적으로 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베트남이 포함된 한·ASEAN FTA 체결을 통해 이미 FTA 관계를 수립하였다. 2007년 6월에 발효된 한·ASEAN FTA가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 증진에 크게 기여하면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후 수출과 수입에서 연평균 두 자릿수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ASEAN FTA는 ASEAN 10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적 한계로 인해 양국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약 90% 수준인 한·ASEAN FTA 상품 개방도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 한·인도 CEPA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와 투자시장에 대한 개방은 매우 제한적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일본이 ASEAN 차원에서의 FTA(일본은 FTA 대신 경제협력

협정이라는 의미의 EPA를 사용하고 있다)와 더불어 베트남과 양자간 FTA(EPA)를 통해 다자간 협정을 보완했다는 점도 우리나라가 한·베트남 FTA를 추진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한·ASEAN FTA보다 개방 수준 더 높이는 것이 과제

한·베트남 FTA를 통한 추가 개방으로 양자 간 양허 수준을 더 높일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의 베트남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지고 이는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같이 베트남이 일본이나 중국에 개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양허를 우리나라가 얻어낼 경우 베트남 시장에 대한 시장 선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및 투자시장에 대한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및 베트남에서의 경영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자국 서비스시장 개방에는 매우 소극적이며 베트남도 국내 서비스시장 개방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투자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은 우리나라 투자 진출 기업의 베트남 현지에서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제한적이나마 일부 유통 및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 기업의 현지 경영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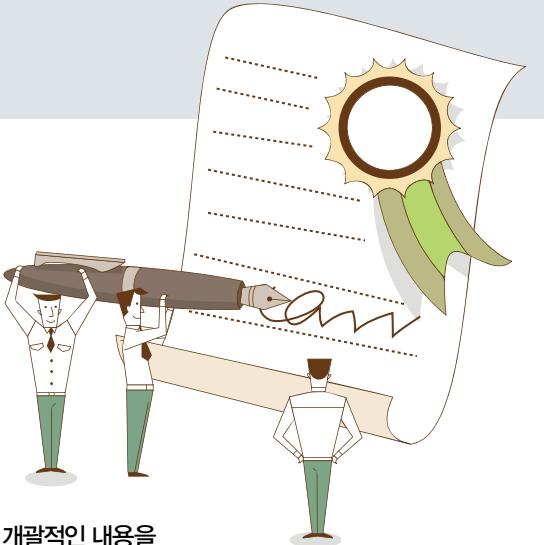
한·ASEAN FTA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한·베트남 FTA에서는 양국 정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FTA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방안을 협정문내에 포함함으로써 어렵게 체결된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2차 협상(2013년 5월)을 마친 한·베트남 FTA 협상은 한·ASEAN FTA의 추가협상 성격이라는 점에서 쉽게 진전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양국 모두 한·ASEAN FTA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은 민감한 부분을 다루면서 한·ASEAN FTA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 FTA를 통해 한·ASEAN FTA의 다자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위해 양국 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접근을 할 경우, 분명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예제로 따라하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완전정복

정해진 서식 없이 필수항목만 기재, 권고서식도 많이 활용



지난 호 '일기 쉬운 원산지증명서 작성 따라잡기'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호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자. 원산지 판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여러 산업분야에 꼭넓게 사용되는 볼트를 생산하는 가상의 기업 '번개나사'의 실무자 '나무역' 과장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 '애플모터스'로 수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글 이민선 관세사

개요	
수출품	종 제품의 HS코드 앞 4자리(4단위)가 7217에서 7318로 변경되었으므로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한·미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예시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판정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합한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관세사 등 법적으로 공인된 전문가의 확인·검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자	수출자 입장에서 FTA활용 시 일반 무역서류 외에 바이어(수입자)에게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는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전부다. 그러나 FTA 활용은 당장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보다 사후검증에 대비해 입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우선 위에서 예시로 든 상황에서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자.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이면서 자율서식이다. 지정된 서식도 없고, 특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다. 말 그대로 자유다. 다만 한·미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8가지 필수항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수입자	볼트를 생산하는 번개나사의 나무역 과장은 미국의 애플모터스(Apple Motors)로부터 납품 주문을 받았다. 볼트의 경우 HS7318.15에 해당하는 철강제 볼트의 경우 재질 및 규격에 따라 0%, 6.2%, 8.5%가 적용되는 미국의 수입 기본관세율이 한·미 FTA 적용 시 단계적 철폐가 적용되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세가 즉시철폐되었다.
(위 수출품, 수출자, 수입자는 모두 가상의 품목과 주소임. 단 볼트의 HS코드와 원산지 기준은 실제의 것을 따름.)	

볼트를 생산하는 번개나사의 나무역 과장은 미국의 애플모터스(Apple Motors)로부터 납품 주문을 받았다. 볼트의 경우 HS7318.15에 해당하는 철강제 볼트의 경우 재질 및 규격에 따라 0%, 6.2%, 8.5%가 적용되는 미국의 수입 기본관세율이 한·미 FTA 적용 시 단계적 철폐가 적용되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세가 즉시철폐되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앞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간단히 짚고 넘어 가자. 해당 제품(HS코드: 7318.15)은 스틸 와이어(HS코드: 7217.10)를 일정 길이로 절단한 후 볼트의 형상을 만드는 단조 및 나사를 성형하는 전조공정을 통해 만드는데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 세변변경기준(CTH)이다. 최

종 제품의 HS코드 앞 4자리(4단위)가 7217에서 7318로 변경되었으므로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한·미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예시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판정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합한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관세사 등 법적으로 공인된 전문가의 확인·검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자 입장에서 FTA활용 시 일반 무역서류 외에 바이어(수입자)에게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는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전부다. 그러나 FTA 활용은 당장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보다 사후검증에 대비해 입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우선 위에서 예시로 든 상황에서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자.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이면서 자율서식이다. 지정된 서식도 없고, 특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다. 말 그대로 자유다. 다만 한·미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8가지 필수항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항목(협정문 제6.15조 2항)

- ①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 확인 정보 포함)
- ②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③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 ⑥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증명일자
- ⑧증명서 유효기간

그러나 업무의 편의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권고서식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언어로 작성해도 무방하나, 한글로 작성 시 미국 세관이 번역본을 요구하면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미국 세관으로부터의 추가 서류 요청 자체가 대개 끼려지는 일일 것이다. 모든 무역서류가 영어로 작성되는 만큼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영어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위 사례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 보자.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예시(한국 측 권고서식)

미 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th> </tr> </thead> <tbody> <tr> <td> 1. 수출자 '생산자'와 같은 경우 외에는 필수 기재항목. Name (성명): Bungaenasa Address(주소): Cho dong, Chung ku, Seoul, Korea Telephone (전화): 82 2 123 4567 Fax (팩스): 82 2 123 4568 E-mail (전자우편): bo1@bulc.co.kr </td> <td> 2. 원산지 포괄증명 기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재. Blanket Period From YYYY / MM / DD (부분) To YYYY / MM / DD (부분) </td> </tr> <tr> <td> 3. 생산자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수출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가능) Name (성명): Bungaenasa Address(주소): Cho dong, Chung ku, Seoul, Korea Telephone (전화): 82 2 123 4567 (생산자) Fax (팩스): 82 2 123 4568 E-mail (전자우편): bo1@bulc.co.kr </td> <td> 4. 수입자 물품의 수입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Name (성명): Apple Motors Address(주소): Broadway Ave, New York, NY, United States Importer Telephone (전화): 1 234 456 7890 Fax (팩스): 1 234 456 7891 E-mail (전자우편): apple@ptt.com </td> </tr> <tr> <td colspan="2"> 5. 원산지 증명 대상 물품 내역 LIST OF PRODUCTS SUBJECT TO POINT OF ORIGIN </td> </tr> <tr> <td> Serial No. (증명번호) U1 </td> <td> Description of Goods (품명·규격) Roll(AAA-1) </td> <td>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100,000pcs </td> <td> HS2002 No. (HS2002 번호) 7318.15 </td> <td> Preference Criterion (원산지기준) PSR(CTH) </td> <td>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Korea </td> </tr> <tr> <td colspan="6"> 6. Observations: Invoice NO ABC123 Date: 1 OCT 2013 (특수사항) </td> </tr> <tr> <td colspan="6"> I certify that: 본인은 사실과 사실과 확신합니다.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draw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당시 서식은 기재되는 서류는 사실이고 신뢰하여 기사로 사용에 사용될 때에는 충분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I agree to inform, and to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i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e Certificate. 기재한 이 증명서의 원증서는 대체로 같은 문서로 확신하며, 유통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증명서의 유통상입니다. 유통기간에 범위를 미치는 이나 판매자는 대체로 같은 문서로 확신하며, 유통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relevant Free Trade Agreement.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과 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유통상으로 적용됩니다. This Certificate contains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정본서류를 포함하여 총 _____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d> </tr> <tr> <td colspan="2"> 7. 서명 등 '증명자 성명', '증명일자'는 필수기재항목. </td> <td colspan="4"> 7. Authorized Signature (증명인의 서명) Name: Muyeok Nah Title: Manager (직위) 2013. 10. 1 (날짜) Telephone: 82-2-123-4567 Fax: 82-2-123-4568 (팩스번호)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제6.1조 가속화, 대체 원산지증명서)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제6.1조 기초 원산지증명서) 2. 원산지 증명서 기재 생략 가능하여, 항공편지 우편을 선택하여 서명할 수 있음 </td> </tr> </tbody> </table>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수출자 '생산자'와 같은 경우 외에는 필수 기재항목. Name (성명): Bungaenasa Address(주소): Cho dong, Chung ku, Seoul, Korea Telephone (전화): 82 2 123 4567 Fax (팩스): 82 2 123 4568 E-mail (전자우편): bo1@bulc.co.kr	2. 원산지 포괄증명 기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재. Blanket Period From YYYY / MM / DD (부분) To YYYY / MM / DD (부분)	3. 생산자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수출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가능) Name (성명): Bungaenasa Address(주소): Cho dong, Chung ku, Seoul, Korea Telephone (전화): 82 2 123 4567 (생산자) Fax (팩스): 82 2 123 4568 E-mail (전자우편): bo1@bulc.co.kr	4. 수입자 물품의 수입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Name (성명): Apple Motors Address(주소): Broadway Ave, New York, NY, United States Importer Telephone (전화): 1 234 456 7890 Fax (팩스): 1 234 456 7891 E-mail (전자우편): apple@ptt.com	5. 원산지 증명 대상 물품 내역 LIST OF PRODUCTS SUBJECT TO POINT OF ORIGIN		Serial No. (증명번호) U1	Description of Goods (품명·규격) Roll(AAA-1)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100,000pcs	HS2002 No. (HS2002 번호) 7318.15	Preference Criterion (원산지기준) PSR(CTH)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Korea	6. Observations: Invoice NO ABC123 Date: 1 OCT 2013 (특수사항)						I certify that: 본인은 사실과 사실과 확신합니다.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draw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당시 서식은 기재되는 서류는 사실이고 신뢰하여 기사로 사용에 사용될 때에는 충분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I agree to inform, and to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i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e Certificate. 기재한 이 증명서의 원증서는 대체로 같은 문서로 확신하며, 유통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증명서의 유통상입니다. 유통기간에 범위를 미치는 이나 판매자는 대체로 같은 문서로 확신하며, 유통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relevant Free Trade Agreement.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과 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유통상으로 적용됩니다. This Certificate contains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정본서류를 포함하여 총 _____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서명 등 '증명자 성명', '증명일자'는 필수기재항목.		7. Authorized Signature (증명인의 서명) Name: Muyeok Nah Title: Manager (직위) 2013. 10. 1 (날짜) Telephone: 82-2-123-4567 Fax: 82-2-123-4568 (팩스번호)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제6.1조 가속화, 대체 원산지증명서)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제6.1조 기초 원산지증명서) 2. 원산지 증명서 기재 생략 가능하여, 항공편지 우편을 선택하여 서명할 수 있음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수출자 '생산자'와 같은 경우 외에는 필수 기재항목. Name (성명): Bungaenasa Address(주소): Cho dong, Chung ku, Seoul, Korea Telephone (전화): 82 2 123 4567 Fax (팩스): 82 2 123 4568 E-mail (전자우편): bo1@bulc.co.kr	2. 원산지 포괄증명 기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재. Blanket Period From YYYY / MM / DD (부분) To YYYY / MM / DD (부분)																																
3. 생산자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수출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가능) Name (성명): Bungaenasa Address(주소): Cho dong, Chung ku, Seoul, Korea Telephone (전화): 82 2 123 4567 (생산자) Fax (팩스): 82 2 123 4568 E-mail (전자우편): bo1@bulc.co.kr	4. 수입자 물품의 수입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Name (성명): Apple Motors Address(주소): Broadway Ave, New York, NY, United States Importer Telephone (전화): 1 234 456 7890 Fax (팩스): 1 234 456 7891 E-mail (전자우편): apple@ptt.com																																
5. 원산지 증명 대상 물품 내역 LIST OF PRODUCTS SUBJECT TO POINT OF ORIGIN																																	
Serial No. (증명번호) U1	Description of Goods (품명·규격) Roll(AAA-1)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100,000pcs	HS2002 No. (HS2002 번호) 7318.15	Preference Criterion (원산지기준) PSR(CTH)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Korea																												
6. Observations: Invoice NO ABC123 Date: 1 OCT 2013 (특수사항)																																	
I certify that: 본인은 사실과 사실과 확신합니다.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draw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당시 서식은 기재되는 서류는 사실이고 신뢰하여 기사로 사용에 사용될 때에는 충분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I agree to inform, and to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i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e Certificate. 기재한 이 증명서의 원증서는 대체로 같은 문서로 확신하며, 유통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증명서의 유통상입니다. 유통기간에 범위를 미치는 이나 판매자는 대체로 같은 문서로 확신하며, 유통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relevant Free Trade Agreement.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과 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유통상으로 적용됩니다. This Certificate contains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정본서류를 포함하여 총 _____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서명 등 '증명자 성명', '증명일자'는 필수기재항목.		7. Authorized Signature (증명인의 서명) Name: Muyeok Nah Title: Manager (직위) 2013. 10. 1 (날짜) Telephone: 82-2-123-4567 Fax: 82-2-123-4568 (팩스번호)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제6.1조 가속화, 대체 원산지증명서)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제6.1조 기초 원산지증명서) 2. 원산지 증명서 기재 생략 가능하여, 항공편지 우편을 선택하여 서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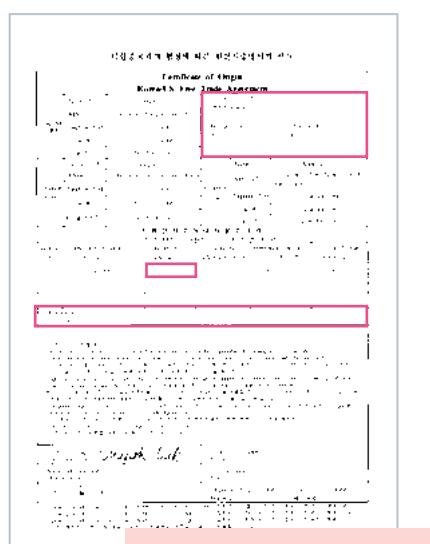
2. 원산지 포괄증명 기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재.

4. 수입자
물품의 수입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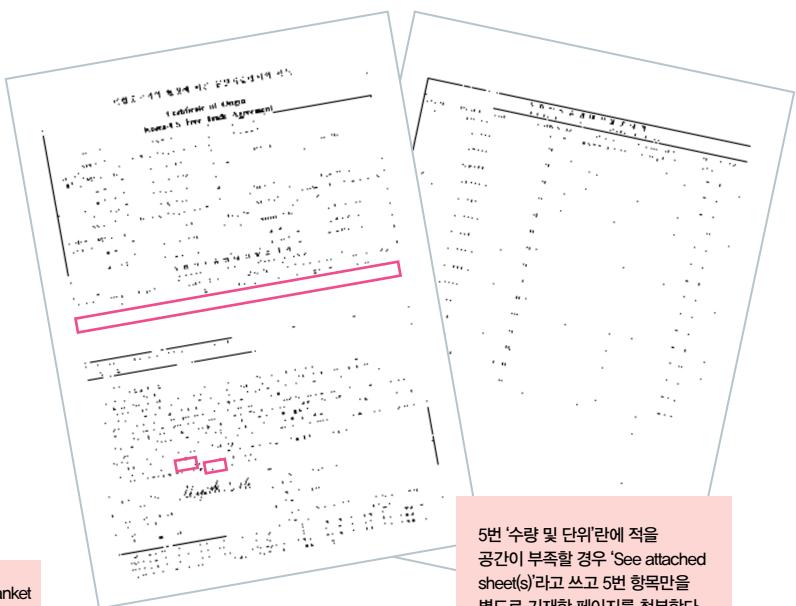
5. 원산지 증명 대상 물품내역
'HS품목번호', '품명', '원산지국가는 필수기재항목. '품명·규격', '수량·단위'는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

7. 서명 등
'증명자 성명', '증명일자'는 필수기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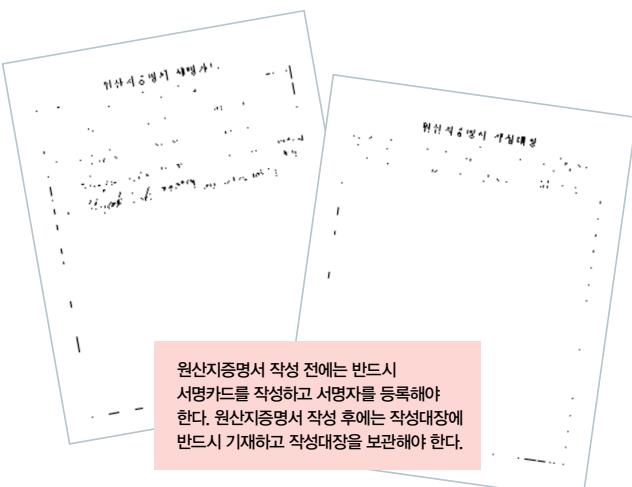
원산지증명서
WO, PSR, PE 중 하나를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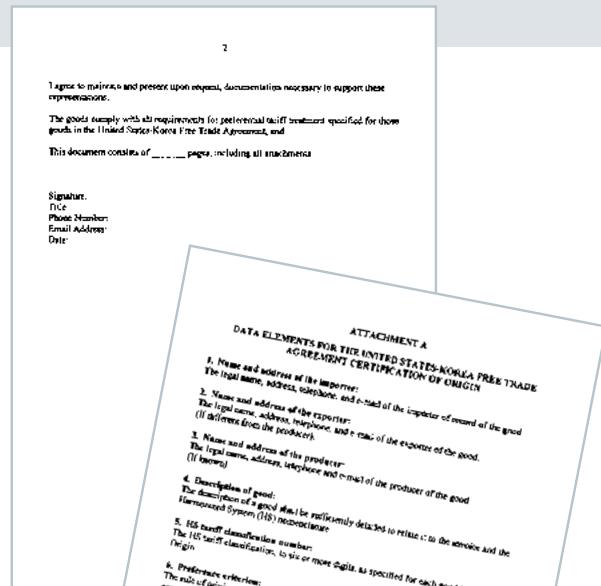
포괄증명의 경우 2번 항목 '원산지포괄증명기간(Blanket Period)'에 포괄증명을 원하는 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표시하면 된다. 이 경우 6번 '특이사항'란에 인보이스 넘버는 적지 않고, 5번 '수량 및 단위'란도 비워둔다.



5번 '수량 및 단위'란에 적을 공간이 부족할 경우 'See attached sheet(s)'라고 쓰고 5번 항목만을 별도로 기재한 페이지를 첨부한다. 이 경우 전체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전에는 반드시 서명카드를 작성하고 서명자를 등록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후에는 작성대장을 반드시 기재하고 작성대장을 보관해야 한다.



미국측의 권고서식은 특별한 형식을 권고한다기보다는 필수 기재항목(Data Elements)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측의 권고서식과 형태는 다르지만, 필수 기재항목은 동일하다. 특히 7번 항목은 'Single Shipment(비포괄)'의 경우 인보이스 넘버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다.

한·미 FTA에서는 동일 품목을 반복해서 수출하는 경우 포괄증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2번 '원산지포괄증명기간(Blanket Period)'에 포괄증명을 원하는 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표시하면 된다. 단, 포괄증명이 아닐 경우는 6번 특이사항(Observation)란에 인보이스의 발행번호를 적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이는 상대국 세관 입장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와 인보이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심의 여지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포괄증명인 경우에는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5번 '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LIST OF PRODUCT(S) SUBJECT TO PROOF OF ORIGIN)' 항목의 '수량 및 단위(Quantity & Unit)'란을 비워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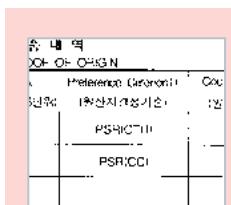
다만 포괄증명 여부는 수출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는 수입자와 협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환율과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쉽게 달라질 수 있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포괄증명을 할 경우 주의 할 필요가 있다.

5번 '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LIST OF PRODUCT(S) SUBJECT TO PROOF OF ORIGIN)'의 경우 품목 리스트가 권고서식에 제시된 3줄을 넘을 경우 5번 항목에는 'See attached sheet(s)'라고 쓰고, 5번 항목만을 기재한 별도 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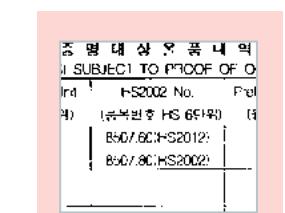
이지를 덧붙이면 된다. 이 경우 6번과 7번 항목 사이 확인사항 마지막에 원산지증명서가 몇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적으면 된다. 덧붙일 페이지가 없는 경우 1을, 1페이지가 덧붙여져 있다면 총 2페이지가 되므로 2를 적으면 된다.

한편 5번 항목의 'Preference Criterion(원산지결정기준)'의 경우 권고서식 아래부분에 각주 형태로 3가지 기재 방법이나와 있다. 이를 보면 WO, PSR, PE다. WO의 경우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을 말하며 농수산물처럼 모든 생산과정이 역내에서 이뤄진 경우에 적용된다. PSR은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으로서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변변경기준을 말하는데, 이 경우 PSR을 적

은 뒤 괄호 내에 품목별 상세적 용기준인 'RVC(역내부가가치기준) 50%' 또는 CC(2단위 세변변경기준), CTH(4단위 세변변경기준), CTSH(6단위 세변변경기준) 등을 기재할 수 있다. PE는 'Produced Exclusively'의 약자로 100% 역내산 재료로 생산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5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권고서식 하단 각주에 나와 있는 WO, PSR, PE 중에 하나를 적되, PSR일 경우 CC, CTH, CTSH, RVC 등의 구체적 판정 기준을 괄호로 써 주는 것이 좋다.



한·미 FTA 협정문은 HS2002 버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 쓰이고 있는 HS2012 코드와 다른 경우 HS2002에 해당하는 HS코드를 적어야 한다.

또한 5번 항목의 'HS2002 No.(품목번호 HS 6단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 한·미 FTA 협상 당시의 HS버전인 HS2002를 적어야 한다. 협정문은 HS2002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HS2012와 HS2002에 의한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HS2012 버전 외에도 HS2002 기준에 의한 품목번호를 별도로 표시해 주어야 한다.

지난호에 설명한 대로 모든 FT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자와 서명은 반드시 서명카드에 등록된 사람과 동일인이어야 한다. 서명카드에는 여러 명이 기재될 수 있으며, 대개는 인보이스(상업송장)의 작성·서명권자와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서명카드에는 대표이사와 무역담당 임원 및 담당직원 이름이 동시에 올라가는 사례가 많다. 서명카드에 기재된 자가 변경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지정해 날짜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서명카드와 작성대장은 사후검증을 위해 반드시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서류들이다.■



FTA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 자료실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찾을 수 있다.



실전 FTA 활용 노하우 – **화학공정에서 재료의 단순혼합공정**

‘단순 혼합’도 분자식 바뀌면 ‘충분가공’ 인정

일반적인 FTA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나뉜다.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의 지위를 획득하려면 이 두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일반기준 중 기본원칙에는 역내가공원칙·충분가공원칙·직접운송원칙 등이 있는데, 이 중 충분가공원칙에서 문의가 많았던 사례를 짚어 보자.

글 유종민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

UV경화수지를 생산하는 화학업체 A사 담당자로부터 문의가 왔다. “역외산 화학제품 두 가지를 혼합해 새로운 화학제품을 생산했는데, 이 경우 전혀 다른 새로운 세번의 제품이 생산돼 원산지결정기준의 품목별기준을 만족시키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위에 물어 보니 단순히 혼합만 하는 공정만을 거치는 경우 이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어 그러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충분가공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해 역내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경우 역내산 판정을 받아 EU수입국 현지에서 한·EU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를 문의한 사항이었다.

단순·경미한 공정만 거치면 역내산 인정 불가

충분가공원칙이란 역내에서 역외산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즉, 단순·경미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의 경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형되는 핵심적인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품목별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EU FTA 협정문의 원산지결정기준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결정기준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농,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차. 감별, 척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
- 카. 병, 캔, 플라스틱,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거. 시험 또는 측정
- 너.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 더. 동물의 도살

‘충분가공원칙’



별도 설비 갖추거나, 화학성분 바뀌면 ‘충분가공’ 인정

주제5를 간단히 풀이하면 단순히 혼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공정을 위해 특별히 투자된 설비·기계 등을 통한 경우는 ‘단순한’ 공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혼합만 하더라도 화학적 성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단순한’ 공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A사의 경우 해당 제품을 혼합하기 위한 별도의 설비와 공정을 갖추고 있었고, 또한 혼합 후 생산된 제품은 전혀 다른 화학적 성질로 변형되어 HS코드의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강의에서 본 사례를 들 경우, 강의 후 다음의 화학업체 담당자들로부터 그간 충분가공원칙의 충족여부 판단 때문에 FTA 적용을 망설였다는 경우를 종종 듣곤 한다. 참고로 한·미 FTA에서도 화학반응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분자의 배열이 바뀌면 화학반응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6부의 주석: 화학반응〉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제3823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생산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이 부에 “화학반응”이란 분자내의 결합을 깨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을 형성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시 “화학반응”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2. 용제용제수(solvent water)를 포함한다)의 제거
3.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주의할 점은 충분가공원칙의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위 A사의 사례처럼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품목별기준을 충족하는 등 FTA원산지 충족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생산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라도 반드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이다. ■



부담스런 부가가치기준 어떻게 해결할까

주먹구구식 계산·조급함은 금물,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수출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HS코드만 파악하면 되는 세번변경기준에 비해 가격정보를 일일이 파악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가가치기준은 실무자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래의 방법대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부가가치기준의 입증도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글 손시영 뮤추얼 스텠다드 이사(공인회계사/세무사) syson@mus-kr.com

국내 기업들 간에 주고받는 FTA 서류인 'FTA원산지(포괄)확인서'를 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 내역 중 현재 발효 중인 대부분의 FTA에 따른 교역에서 역내산으로 표기되는 품목이 유독 한·인도 CEPA에 따른 교역과정에서는 역외산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세번변경기준은 최종제품과 원재료의 HS코드만 확인하면 되니 그나마 적용이 쉬운데, 부가가치기준은 쟁겨야 할 정보가 너무 많고 내용이 복잡해 선뜻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보니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역내산 판정을 받는 조합기준이 많은 한·인도 CEPA에 따른 교역품의 역내산 판정 결과가 나오기 힘든 것이다.

내용이 어렵다 보니 제품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는 회사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다. 하지만 회사 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피할 길이 없어진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행동양식은 두 가지로 갈라진다. 하나는 어렵지만 차근차근 내용을 준비해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야 어찌 되건 용기(?)를 내어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역내산으로 판정해 버리는 것이다. 전자가 복잡하고 힘든 과정과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후자는 눈 한 번 짚고 갑으면 끝났다고 생각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후자를 택하고픈 유혹을 느끼는 것이다. 유혹에 굽하지 않고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회사를 위해 팁을 드리고자 한다.

1

주먹구구식 재료비 산출은 금물, 데이터의 근거를 확보하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가 재료비이다. 일전에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를 방문해서 원산지 관리 담당자에게 재료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물어봤더니 구매 담당자에게 확인했다며 구매 담당자를 불러주었다. 그래서 그 구매담당자에게 데이터의 출처를 질문했더니 자신의 머릿속에 다 있다는 매우 당당한 (?) 대답이 돌아왔다. 구매 업무만 20년 가까이 한 그 담당자는 해당 자재의 국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훤히 뛰고 있다며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또 다른 회사의 경우 구매단가는 가장 최근에 구매한 자재의 단가를 사용한다고 대답한 경우도 있었다. 두 경우 모두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금액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나름'의 합리성이라는 점에 있다.

한·EU FTA 협정문 제11조 재료구분 회계의 1문단에 보면 '재료는 보관되는



2

FTA 혜택 적용, 한 달 늦어도 괜찮다

두 번째는 과신을 부리거나 조급해하지 말자는 것이다. FTA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고객의 요청 또는 경쟁사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갑자기 FTA의 적용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힘든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담당자를 짓누르는 가장 큰 부담감은 바로 빨리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다. FTA 강의에서 만나는 많은 기업 실무자들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빨리 FTA를 준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집중력을 가지고 야근을 불사하며 노력한다면 준비기간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빨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BOM(자재명세서)을 확인하고 재료비를 따져보고 조정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 바쁘고 급하다고 해서 행기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놓친다면 결국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산이라고 적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급해하는 담당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대답을 한다. "지금까지 FTA 적용하지 않고도 사업을 잘 해온 회사가 한 달 늦게 FTA 혜택을 본다고 해도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 그리고 "그 한 달이 아까워 서두르다가 회사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3

혼자 끙끙대지 말고 사내 협조를 구하라



마지막 팁은 절대 혼자 FTA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회사들을 보면 FTA 담당자는 물류나 영업 담당자가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경우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힘들어 하거나 낯설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럴 때 재무나 회계 업무 담당자에게 FTA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조정가치, 재료비 등)을 산출할 방법을 묻는다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FTA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HS코드, BOM, 재료비, 조정가치, 원산지 등)는 여러 방면의 것으로 너무나도 방대하다. 이를 한 사람이 모두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각 업무의 담당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FTA 준비기간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FTA를 체결하면 작은 나라가 손해인가

작은 나라일수록 시장 확대 효과 커져

글 이경희 신세계그룹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FTA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점이다. 덩치 큰 사람과 덩치가 작은 사람이 서로 싸우면 덩치가 작은 사람이 당연히 손해라는 인식이 FTA에도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무역이론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와 경제규모가 큰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면 오히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가 더 큰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교우위와 무역의 이익

양국이 잘 하는 것에 집중하면 생산 총량은 증가

리카르도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1817년에 ‘정치경제와 조세이론(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이라는 책에서 국가 간 무역이 비교우위에 따라 이루어질 때 서로 이익을 본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에 A국과 B국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A국과 B국은 모두 자국 내에서 TV와 의류를 생산한다고 하자. A국은 TV 생산과 의류 생산에 있어서 B국보다 생산능력이 더 우수하다. 이때 우리는 A국이 TV와 의류 생산에 있어서 모두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를 갖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A국의 우위 정도는 TV를 생산할 때와 의류를 생산할 때 차이가 난다. TV를 생산할 때는 A국이 B국에 비해 3배 더 잘 만들지만, 의류를 생산할 때는 A국이 B국에 비해 2배 더 잘 만든다. 즉, A국은 B국에 비해 의류를 생산할 때보다 TV를 생산할 때 우위의 정도가 훨씬 강하다. 우리는 이때 A국이 TV 생산에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가진다고 말한다. 한편 B국은 A국에 비해 TV나 의류 생산 모두 절대열위를 보이지만, TV생산과 의류 생산에 있어서 열위의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즉 B국은 A국에 비해 TV를 생산할 때 보다 의류를 생산할 때 열위의 정도가 더 약하다. 이때 우리는 B국이 의류를 A국에 비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의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국가가 모든 상품 생산에 절대우위일 수는 있으나 모든 상품 생산에 비교우위일 수는 없다. 두 가지 상품 생산 모두에 절대 열위에 있는 국가도 한 상품 생산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교우위를 갖는다.

무역이론은 A국과 B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국제 분업을 할 경우 서로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FTA 체결을 통한 국제분업의 확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A국과 B국이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는 자국 내에서 TV와 의류를 모두 생산했다고 하자. 그런데 FTA를 체결해서 이제 양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A국은 TV만 생산하고 B국은 의류만 생산하여 서로 교역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A국과 B국은 각각 자국이 두 상품 중 상대적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만 생산해서 교역할 경우 FTA 체

결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전에는 노동력의 일부는 TV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의류를 생산했으나, FTA 체결 이후 A국은 자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TV만 생산하고, B국은 자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의류만 생산해서 서로 교역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양의 자원을 투입해 A국과 B국이 생산한 TV와 의류의 총량은 무역 이전에 비해 훨씬 증가하게 되고, 양국 소비자들은 이전 보다 더 많은 TV와 의류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양국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해서 양국 모두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FTA 이익은 양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각국이 유한한 자원을 상대적으로 생산능력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여 생산함으로써 양국 전체로 더 큰 규모의 생산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증대된 생산량을 각국 간에 적절히 분배하면 양국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경제규모와 무역의 이익

작은 국가일수록 시장 확대 효과 커져

무역 전과 비교해 한 나라의 수출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또는 수입품의 가격이 낮을수록 그 나라가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증가한다. 보다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수출품이 상대국 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조건으로 팔릴수록 그 나라의 이익은 증가한다. A국과 B국이 모두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양국은 무역 이전 자국 내에서 판매되던 가격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상대국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어야 하고, 반면 수입하는 상품은 무역 이전보다 더 싸져야 한다.

FTA 체결 이후에는 A국과 B국의 시장이 통합돼서 TV와 의류 가격은 A국과 B국을 합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A국과 B국의 경제규모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가정하자. B국의 경제규모가 워낙 작은 경우, A국은 B국과 FTA를 체결해도 시장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A국은 B국과 FTA를 해도 TV 수요 증가분이 미미하고 TV 수출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규모가 작은 B국은 상대국인 A의 시장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자국이 수출하는 의류에 대한 수요 및 수출가격이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 또한 B국은 A국으로부터 TV 공급이 증가하면서 매우 저렴하게 TV를 수입할 수 있다. 요약하면, FTA를 체결하는 국가 간에 경제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경제대국은 FTA에 따른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제소국은 FTA 체결로 넓은 상대국 시장을 추가적으로 얻게 돼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경제규모가 작은 칠레나 싱가포르가 경제규모가 큰 브라질이나 인도보다 FTA를 더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이유를 바로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FTA체결 이익을 높이고자 경제규모가 큰 미국이나 EU와 FTA를 체결한 바 있고, 현재는 세계 최대 시장 중의 하나인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일러스트 서용남

FTA news

정리 김보람 기자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제신문



03

한·인도네시아 CEPA 제5차 협상 개최

한·인도네시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차 협상이 9월 8~13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측은 사할라 룸반 가올(Sahala Lumban Gaol) 공기업부 장관 전문자문관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통관, 규범, 협력 및 능력배양 등 각 분야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인도네시아는 2012년 기준 우리의 제8대 교역국이자 제7대 투자대상국이다.

01

제5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FTA 활용 의지가 있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9월 27일(금)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5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활용기업 수출지원 연계 방안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 △중소기업 FTA·수출컨설팅 성공사례 △FTA 사후검증 자가검증툴 FTA-헬퍼 개발경과 및 보급계획등이 보고·논의되었다.

산업부는 FTA 교육·컨설팅을 받은 수출초보기업 등의 실질적 수출확대를 위한 'FTA 활용기업 수출지원 연계 방안'으로 수출유관기관의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천, 전시회 등 해외 시장 개척활동에 인센티브 부여, 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10월 10일, 무역협회)'에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수출성공요인을 분석하고 10개 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는 'FTA 사후검증 자가검증툴 FTA-헬퍼 개발경과 및 보급계획'을 보고하면서 10월 1일부터 FTA 사후검증 자가검증툴을 배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2

제320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돈육가공업체 등 5개 기업에 FTA에 따른 무역피해 인정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9월 27일 제320차 회의를 개최하여 무역조정을 신청한 6개 기업 중 5개 기업에 대해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 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돈육가공 3개 기업, 염모제와 페인트를 생산하는 2개 기업이 한·EU FTA로 인한 수입 증가로 무역피해를 인정받은 것이다. 무역 피해 판정을 받은 5개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체결 이후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



04

산업부,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방안' 발표

통상의 손톱 밑 가시 대응 위한 민관합동 체제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마련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우리 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정부적, 민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보호주의의 추세가 강화되면서 WTO/TBT 통보문 건수가 2012년에 사상최대(1,560건)를 기록하는 등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 중소기업의 26.9%, 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16.7%가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중기중앙회, 2013년 6월)할 정도로 외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외진출의 주요한 애로로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통상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간 해외의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일회성 조사와 수세적 입장, 정부주도의 대응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의 실질적 애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은 △체계적 정보관리(비관세조치 사례를 체계적 수집·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관간 공유 강화) △능동적 전략 수립(통상추진위원회를 전략수립을 위한 부처 간 협의의 장으로 활용하고, 양자협의, FTA 등 다각적인 통상채널을 활용하여 대응) △민관소통 활성화(비관세장벽이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운영)의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EU와 같은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로 민관이 협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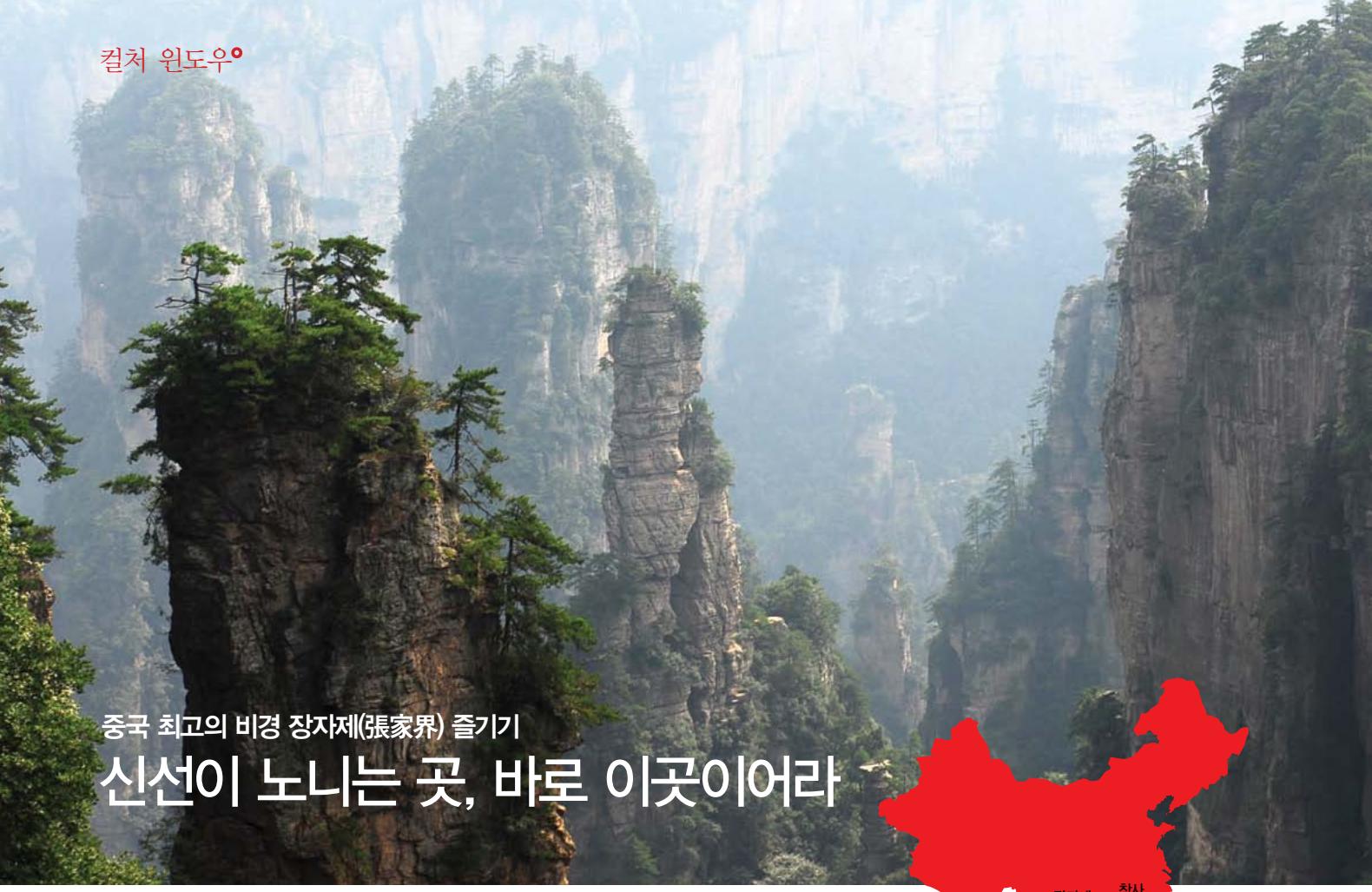
관세청 고졸구직자 FTA 전문인력 양성·채용 원스톱 지원

FTA 전문인력의 저변을 고졸인력으로 확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9월 26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에 'FTA관'을 별도로 마련해 고졸 구직자들이 FTA 실무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FTA관에는 (주)누리안인터내셔널, (주)일흥 등 FTA 무역관련 인력 채용 의사가 있는 20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고졸 구직자에 대한 채용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FTA 전문인력의 역할·전망 등에 대한 소개 및 1대 1 맞춤형 진로상담 등의 FTA 전문인력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고졸인력에게 새로운 전문직종으로의 진로결정에 길잡이 역할을 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과의 고용 매칭까지 지원하는 '고용창출형 FTA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58명의 미취업자들이 FTA 전문인력으로 기업에 채용되는 등 중소기업과 구직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는 특성화고교생 대상의 FTA 방과후교육, 전문자격취득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총 280명(17개 고교)의 고교생이 수료하는 등 FTA 전문인력의 저변을 고졸인력으로 확대하였다. 금번 취업대박람회에서는 FTA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특성화고교생을 비롯한 우수한 고졸인력이 참가, 채용면접을 진행해 FTA 전문인력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특성화고교생은 재학시절부터 수출입실무, 회계 등 특화산업의 실무를 접했다는 측면에서 졸업과 동시에 FTA 무역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FTA 전문인력으로 종점 육성해나갈 방침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중국 최고의 비경 장자제(張家界) 즐기기

신선이 노니는 곳, 바로 이곳이어라



중국인들은 평생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장자제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으랴(生不到張家界百歲豈能稱老翁)”라는 고사를 인용해 답한다. 억겁의 세월이 빚어낸 장자제의 아름다움을 목도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 고사가 전혀 과장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글 양충모 객원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나라 장량이 도망친 데서 '장 씨의 마을' 유래
장자제의 비경은 세월이 빚어낸 하나의 작품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억8000만 년 전, 지각 운동으로 해수면 아래 잠겨있던 땅이 융기하고 수억 년간 침식·풍화작용을 통해 약한 부분이 깎아져 만들어진 것이 기암괴석이 올올이 솟아있는 현재 모습의 장자제다. 당(唐)의 시인인 두보(杜甫)가 “어찌 이럴 수 있나. 보고도 믿을 수 없다”며 놀랐던 장자제의 천하절경에는 이런 만고 풍상(萬古風霜)의 비밀이 숨어 있다.

장자제가 중국 역사에 처음 등장한 때는 기원전 200년 경, 한(漢)의 개국공신인 장량이 유방의 토사구팽을 눈치 채고 도망쳐서 정착하면서부터다. ‘장 씨의 마을’이라는 뜻의 장자제라는 명칭도 장량의 정착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한다.

하지만 바위산이 병풍처럼 둘린 혐한 지형탓에 한족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했고, 이

땅은 외부와 단절된 채 소수민족인 투자족(土家族)의 삶의 터전이 됐다.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桃花源記)’의 무릉도원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낙원으로 존재해왔던 셈이다.

장자제가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이 지역 출신 화가가 장자제의 산수를 담은 그림을 발표하면서다. 이후 장자제는 중국 정부에 의해 본격적인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1982년에는 중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됐다.

7,455m 세계 최장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장자제는 후난성(湖南省) 성도인 창사(長沙)에서 400k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다. 한국에서 장자제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창사 구간 직항을 이용한 뒤 차로 4시간 정도 더 가야 한다.

장자제 시내에 도착하면 7,455m 길이의 케이블카가 기다리고 있다. 편도만 35분이 걸리는 세계최장 케이블카다. 케이블카의 종착지는 텐먼산(天門山). 산의 모습이 문(門)과 비슷하다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한다. 장자제의 산 중에서 역사에 가장 먼저 기록된 명산으로 ‘장자제의 혼’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하늘을 향해 장대하게 솟아 오른 봉우리의 기괴함에 경외감마저 들게 한다.

텐먼산에는 텐먼동(天門洞)이 유명하다. 해발 1,300m 바위산 중앙부에 위치하며 높이 131.5m, 너비 57m, 깊이 60m 규모의 커다란 동굴이다. 999개의 계단을 올라 텐먼동에 다다르면 이름처럼 하늘로 가는 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구멍의 형성 원인이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 신비감을 더한다.

텐먼산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곳이 구에이구잔따오(鬼谷棧道)다. 한국어로 귀곡잔도라 불리는 이곳은 해발 1400m 높이의 낭떠러지에 구조물을 설치해 만든 2.5km의 길이의 인공로다. 절벽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운 만큼 아찔하기도 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다소 걱정할 수 있다.

장자제의 핵심 경치구역인 우링위안(武陵源) 풍경명승구는 장자제 국가삼림공원, 텐쓰산 자연보호구, 쑐시구 자연보호구로 나뉜다. 그 중 장자제 국가삼림공원은 중국 제일의 국가삼림공원으로 깎아지는 협곡과 기이한 암벽, 이들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계곡이 일품이다. 이곳에 위치한 황스자이(黃石寨)는 장자제 5경구 중

하나로 장자제에서 가장 높은 1,300m에 자리하고 있는 전망대다. ‘황스자이에 오르지 않고 어찌 장자제를 가봤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패밀처럼 장자제의 웅장함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한 폭의 거대한 산수화처럼 펼쳐진 미경을 보고 있노라면 신선이 노니는 곳에 몰래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듈다.

장자제 국가삼림공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가 바로 위안자제(袁家界)다. 2.8km 거리를 1시간 정도에 산책하며 천하절경의 장자제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1,4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지각 변동과 기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구름다리 모양의 텐샤다이차오(天下第一橋)나 혼을 빼길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미훈타이(迷魂臺)도 놓쳐서는 안 될 위안자제의 명물이다.

돌산 외에 호수와 계곡도 빼놓을 수 없어

텐먼산이 웅장함을 보여준다면 우링위안 풍경명승구의 북서쪽에 위치한 텐쓰산(天子山) 자연보호구에서는 자연의 섬세함을 감상할 수 있다. 가장 개발이 늦게 된 만큼 장자제의 원시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도 하다. 예전에는 텐쓰산 정상까지 가려면 3,500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으나 이제는 5km 길이의 케이블카를 타고 6분 정도 올라가면 쉽게 산꼭대기에 닿을 수 있게 됐다.

텐쓰산 자연보호구를 대표하는 곳은 위비펑(御筆峰)이다. 기이한 모습의 암봉 사이사이에 드문드문 소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붓을 거꾸로 꽂아 놓은 듯하다. 하늘의 천체를 향해 황제가 쓰던 붓을 던진 것이 땅에 꽂혀 만들어진 봉우리라는 전설이 꼭 들어맞는다.

장자제에서는 우뚝 솟아있는 석봉 외에도 아름다운 호수와 계곡 역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장자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쑐시구(素溪谷) 자연보호구는 바위산으로 차곡차곡한 다른 구역과 달리 산과 물, 동굴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곳이다. 그럼처럼 아름다운 산봉우리들이 10리에 걸쳐서 펼쳐진다는 뜻의 협곡 스리화랑(十里畫廊), 은은하고도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반인공호수 바오펑후(寶峰湖), ‘세계 종유동 중 기적의 꽃’이라고 칭미받는 용왕동(龍王洞)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13대 수출품 9월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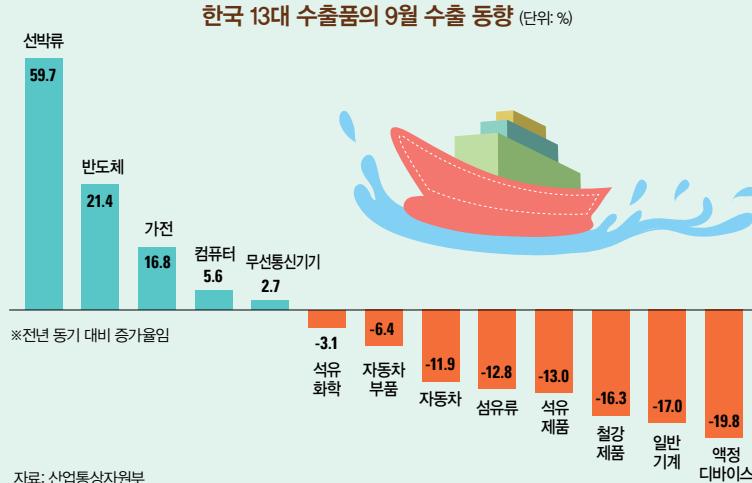
선박 수출 '청신호'...반도체·가전 증가세

글 이진원 기자

한국의 선박 수출이 지난 9월, 전년 동월 대비 59.7% 증가하면서 청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 및 조선은 거래 침체가 계속되었으나, 금년 들어 세계 선박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8월 국내업체의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9% 증가해 호조세다. 다만 지난해 동월 수출이 -48.1%로 기저효과(Base Effect: 기준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아 비교시점의 통계치가 커 보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박류를 포함한 한국의 13대 수출품 중 반도체(21.4%), 가전(16.8%), 컴퓨터(5.6%), 무선통신기기(2.7%)가 9월에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도체의 경우 SK하이닉스 우시공장 화재로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상승했을 뿐 아니라 애플의 저가폰 출시에 따른 핵심 부품의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가전의 경우 생활가전은 해외 현지생산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LED조명의 유럽 수출이 증가하면서 가전 전체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컴퓨터는 태블릿PC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무선통신기기 수출 증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 LG전자의 G2 등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힘을 받았다.

한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자동차, 섬유류는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소폭 하락했다. 석유제품, 철강제품, 일반기계, 액정디바이스는 수요 위축과 단기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



Reader's Letters

독자의 소리

FTA 출기기에 실린 '강소농 천하' 기사를 읽고, 한·중 FTA 체결에 대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FTA 체결로 우리 농기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두려움보다는 전남 고흥 '유자차'의 성공 스토리에서 본 바와 같이 철저한 품질 경쟁력으로 중국 시장에 도전을 한다면 오히려 시장 확대를 통한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농가 및 농식품 분야 기업들이 끊임없는 품질 개발 노력으로 강소농이 되어 한·중 FTA 시장에서 활짝 웃게 되길 바랍니다. 이준임(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매달 월간 '함께하는 FTA'를 통해 FTA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 무역 수출입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FTA 활용과 관련된 정보들을 꼼꼼히 체크하며 변화와 흐름을 익히고 있어요. 작년에 FTA 활용 경진대회를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는데, 올해에도 FTA 활용 경진대회가 열리다면 관련 기사를 꼭 실어주세요. 김혜린(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그동안 FTA에 대한 소식을 방송이나 신문에서만 접하다가 이렇게 잡지를 통해 천천히, 자세히 읽다보니 FTA에 대해 더 쉽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FTA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고려할 점이 매우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한·중 FTA 관련 기사들을 읽으면서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이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되려면 달성하려는 목적에 맞는 대응 전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중 FTA 체결 과정이 우리가 중국 내수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과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선미(인천시 동구 만석동)



우리 기업의 소중한 재산과 일자리를 지켜주는
상표와 상호 차이 알고 가실게요

상호는 회사의 이름, 상표는 상품의 이름!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상표는 등록되면 우리나라 전역에 효력이 미치게 되고 독점배타권을 갖게 됩니다.(상호는 불가!)

상표 취득! 이제 국민입장에서 바뀝니다!

세계최고수준의 빠른
상표디자인 심사처리를
통해 조기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간 경쟁을 해치지 않은 상표는
성질표시로 보지 않고, Positive 심사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표(서비스표) 등록절차
특허청(인터넷/방문)에서 출원인
코드받기 ▶ 선행상표검색(키프리스)
▶ 온라인출원 또는 현장(서면)제출
▶ 상표출원료 납부 ▶ 심사 ▶ 등록

유사한 상표라도 선등록한 출원인이
동의하면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게
'상표공존동의제도'가 도입된다.

개발중인 브랜드를
종업원 관련자가 먼저 상표 출원하는 신의칙 위반에 대한
거절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원 저작자의 권리 보호합니다.

유명캐릭터, 연예인, 방송프로그램 등
모방상표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거절하여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유명상표만으로 한정하던
상표 식별성이 '특정인의 상표'로
완화되어, 원하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견본, 디자인 도면 등 서류작성이
잘못되었더라도 출원인이 쉽게 보정
할 수 있고 재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FTA 활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 3 8 0**

FTA 콜센터 1380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컨설팅, 정보제공,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

FTA 활용정보 통합제공
해외 전문가 초청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정보 제공



▶ 교육 및 홍보

FTA 실무교육 제공 / 대기업 협력업체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회사별 원산지관리시스템 Edu-sulting(교육+컨설팅)



▶ 애로해소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 및 정책 간의 / 협정문 및 이행 관련법령 유권해석 지원
FTA 원산지 증명서 증빙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 컨설팅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HS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 관련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